

기본적인 권리마저 침해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주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법률이 제정되지 않고, 불공정한 처사에 대한 정부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이주민 노동자들은 아래에 열거한 상황중 최소한 하나 이상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

계약위반

계약위반은 이주민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관행중 하나이다. 중개인들이 그들의 임금을 차취하는 것 이외에도,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노동자들은 어떠한 대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 그 이유는 계약을 위반한 측에게 책임을 묻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제조업이나 농장에서뿐만 아니라, 특히 건설업 분야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단결권의 부정, 여권의 압류, 노동

이주민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또 다른 관행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노조에 참가하거나 구성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에서 비롯된다. 게다가, 고용주와 중개인들은 노동자들이 도망가는 것을 방지하려고 그들의 여권과 이주관련 서류들을 압류하고 있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롯되는 이주민 노동자의 무방비 상태는, 그들이 고용주나 중개인으로부터 임금 체불, 삭감,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 회피, 열악한 노동 환경 등의 불공정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을 더욱 높여준다.

직업을 전전하는 이주민 노동자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받는 이주민 노동자들이 흔히 택하는 방법은 다른 직장으로 도망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농장 노동자에게는 혼한 일이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은 이를 노동자들을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도시의 제조업이나 건설업, 서비스업으로 전환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직종간의 이동은, 이주민 노동자들이 이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어기는 상황을 야기하게 된다.

건강과 안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료혜택은, 밀입국자라는 상황과 국립병원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부과하는 2배나 되는 의료비 때문에 매우 제한적이다. 대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만이 회사에 소속된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모성보호나 임신한 여성의 고려한 정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공장이나 농장에서는 많은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농장의 노동자는 치명적인 살충제를 다루어야 하며,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뿐만 아니라, 치료를 받거나 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도 임금조차 받지 못한 채 일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다.

억류장의 상황

말레이시아에서는 이주민 노동자의 감금과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테나가니타'의 1995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지에서 온 300여명의 이주민들이 억류되어 학대당하고 있으며, 질병과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한 억류장에서 주로 각기병으로 인해 42명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부당한 체포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들은, 합법적으로 입국한 노동자들도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의 누명을 쓰고 감금된다는 것이다. 본국의 일선대행사나 중개인들은 이주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지만,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테나가니타'는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말레이시아에 입국한 사례를 다룬 적이 있는데, 그들은 계약서에 따라 지정된 공장으로 보내진 것이 아니라, 대행사에 의해 불법취업을 강요당하게 되었다. 게다가 대행사는 그들의 여권을 팔아버렸다. 이러한 경우, 이주민 노동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적발되는 현장에서 체포되고 만다.

비슷한 경우로, 노동자들이 자신의 여권을 압류하고 있는 대행사나 고용주를 고발하기 위해 경찰서로 가는 경우, 그들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고 감금당한다. 또한, 고용주가 이주민 노동자의 원본 서류를 압류하고 있는 경우도 혼히 있는데, 이는 말레이시아 여권법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정부당국의 단속이 있을 경우 이주민 노동자들은 원본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체포당하게 된다.

착취에 노출되어 있는 가정부

'테나가니타'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여성 이주민 노동자 중에서 특히 가정부들이 가장 착취를 당하기 쉬운 처지에 있다고 한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출신 가정부들의 경우, 아래에 기술된 것과 같은,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관행들의 발생율

이 매우 높다.

· 일정하지 않은 노동시간 : 가정부들이 밤늦게까지 일을 하며, 새벽부터 일을 시작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 계속되는 노동 : 많은 노동자들이 한달에 한번조차 쉬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일부 노동자들은 한달에 한 번 또는 두번의 휴일을 가질 수 있으며, 아주 운이 좋은 소수의 노동자만이 매주 쉴 수 있는 형편이다.

· 두 개의 직장 : 많은 노동자들은 동시에 두군데의 직장에서 일을 하라고 강요당하고 있다. 여기에는 고용 주의 사무실, 공장, 식당 뿐만 아니라 집까지도 포함된다. 어떤 경우에는 가정부들이 고용주의 친척이나 친구들의 집에서까지 일을 하도록 강요당하기도 한다.

또한, 다른 여성 이주민들과 마찬가지로 가정부들 역시 정기적으로 HIV와 임신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둘중에 하나라도 양성반응이 나오게 되면 즉시 추방되고 만다.

여성 노동자에 대한 학대의 발생율이 상당히 높은데 비해, 그들이 가정부로 일하고 있는동안 보상을 받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들은 관련 법률에서 제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을 하는 공간이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학대를 당하더라도 도망치거나 증거를 모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여 고발을 하기가 쉽지 않다. 한 가정부가 그녀의 고용주를 고발하기 위해 경찰서로 간 경우가 있었는데, 오히려 그녀가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그 이유는 고용주가 처음부터 여권을 압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래에 나열한 것은, 말레이시아의 여성 이주민 노동자가 겪게 되는 주요한 문제점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겪게 어려움과 딜레마들이다.

'와티'의 사례

폭행 : 인도네시아인 '와티'는 한 의사에게 고용되어 있었다. 그녀는 아기를 출산하기 위해 찾아갔던 지역 병원의 사회복지사에 의해 '테나가니타'를 만나게 되었다. 그

리고, '테나가니타'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밝혀졌다.

· 그녀는 고용주의 아들로부터 몇 차례 강간을 당했으며, 그 결과로 임신을하게 되었다.

· 그녀는 고용주로부터 여러 차례 신체적인 폭행을 당하였다.

· 고용주는 그녀의 임금을 불법적으로 압류했으며, 제날짜에 임금을 지불하지도 않았다.

· 그녀의 여행 허가서를 고용주가 불법으로 압류했다.

· 그녀는 주야로 일을 했으며, 단 하루도 쉬지 못했다.

보상청구 : '테나가니타'의 도움으로 와티가 보상을 청구하기 위한 조치에는, 강간과 신체적 학대에 관해 경찰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와티의 개인적인 소지품과 체불된 임금, 여행허가서를 고용주로부터 되돌려 받고 학대와 폭행에 대한 피해보상을 청구하며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법률적인 지원도 함께 진행되었다.

결과 : 와티는 경찰과 면담을 해보았지만, 고용주로부터 단지 여행 허가서만을 되돌려 받을 수 있었다. 경찰측에서는 증거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강간에 대한 고발은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조사담당자는 고용주가 계속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며 체불된 임금이나 다른 서류들은 되돌려 받기 힘들다고 말했다.

후에 와티는, 더 이상 이 문제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말을 병원의 사회복지사를 통해 전해왔다. 그동안 그녀는 새로운 고용주를 만났으며, 그녀의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하겠다고 하였다. 그녀의 뜻에 따라, 그 아이는 병원의 도움으로 입양보내지게 되었다.

성적 학대에 관한 사례들은 더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 중에서 '테나가니타'가 접수했던 사례에서는, 크로아티아 대사와 캐나다 출신 국제보건기구 고위책임자에 대한 진술도 있었다.

대응

테나가니타는 이주민 노동자를 위한 상담과 피해보상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이주민 노동자의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법적 해결은 정부의 정책과

관행에 의해 어려움을 겪게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학대를 당하는 경우 노동자가 어떠한 행동을 취한다면, 고용주는 그들의 서류를 압류하고, 노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고용주들은 또한 노동자들이 작업과정에서 부상을 입게되는 경우에도 그들의 노동허가를 취소한다. 그렇게 되면, 그 노동자는 불법체류자가 되어 더 이상 그 나라에서 머무를 수도, 보상을 요구할 수도 없게 된다.
- 편파적인 법률로 인해, 고용주나 대행사들은 그들의 법죄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피해야 할 수 있지만, 이주민노동자의 경우에는 고용주에 의한 서류의 압류 등으로 인해 그들의 의지나 행동과는 상관없이 처벌을 받기도 한다.
- 이주민 노동자가 법적 수단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한 예로, 억류된 노동자에 대한 접견이 금지되어 있으며, 자신의 과실이 아닌 경우로 억류된 경우라도 변호사를 선임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 여성 이주민 노동자의 권리의 인식과 관련해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의 근절을 위한 협약(CEDAW)'이 제대로 준수되지 못하고 있다. 관련기관에 의해 시행되는 이러한 엄격한 조치들은, 이주민 노동자를 단지 생산 도구로만 생각하는, 외국인에 대한 적대적인 성향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이러한 것들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편견과 자국내의 모든 문제들의 원인을 외국인 노동자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에서도 일부 원인을 찾을 수 있다.
- 이주민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목적과, 대사로부터 강간을 당한 필리핀 출신 가정부의 경우처럼 타국과의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 비록 법으로는 이주민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허가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은 그들이 조합을 만들거나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차별적인 강제 정기 건강검진은 임신여부와 HIV 감염여부를 검사한다. 그리고 만약 양성반응이 나오면, 어떠한 항의의 기회도 갖지 못한 채 추방당하게 된다. 이러한

관행은 법적인 수단을 통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을 막고 있으며,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밀입국 노동자에 대한 인정 : '옐로우 카드' 갱신 기한의 문제

밀입국 노동자의 합법적인 등록기간은 지난 1996년 12월로 마감되었다. 이 사면기간 동안 이주민 노동자를 대신하여 입국 관리소에 노동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고용주들은, 노동허가가 승인되었다는 표시인 '옐로우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이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이주민 노동자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나, 그들의 고용주가 노동허가 과정을 마무리짓기 위해서, '옐로우 카드'의 만료기간인 1997년 8월 15일 이전에 벌금을 청산하여야 가능하다. 8월의 '옐로우 카드' 갱신 기한이 다가오면, 특히 건설현장과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이주민 노동자들은 거리로 쫓겨나거나, 원본이 아닌 노동허가 신청서의 사본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억류당한다. '테나가니타'는 이 기간 동안 약 160여건의 이러한 사례들을 다루었다. 이러한 사면의 기본적인 문제는 이주민을 대신하여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의 책임이 전적으로 고용주에게 있다는 것이다.

노동허가를 얻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벌금을 내야하는 노동자로부터 돈을 착취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이주민 노동자는 고용주가 실제로는 노동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된다. 예를 들어 '테나가니타'가 상담한 사례중 하나에 따르면, 44명의 노동자가 노동허가를 얻기위해 지난 사면기간동안 고용주에게 모두 6만 RM의 돈을 지불했다고 한다. 그러나 올해초 이 회사는 문을 닫았으며, 노동자들은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만 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그들이 입국 관리소에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비슷한 사례로, 고용주가 노동허가를 얻어줄 것이라는 생각에 돈을 지불하지만, 그들은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로 해고당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노동자들의 비자가 '불법'이기 때문에 산업부나 노동부에 고발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한다.

지난 8월 11일 '테나가니타'는 노동자들이 고발장을 제출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경로를 만들 것을 입국 관리소와 노동부에게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그들은 밀입국 노동자를 위한 사면기간을 다시 요청했으며, 고용주가 대신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스스로가 등록할 수 있도록 허가해줄 것도 요구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료검사의 민영화

: '외국인 노동자 의료검사 대행사(FOMEMA)'

1997년 9월 17일, 보건부 장관인 '다툭 추아 쥐 맹'은 외국인 노동자들에 의해 유입되었다고 알려진 질병들의 확산을 막기위해, 정부와 'FOMEMA'와의 사이에 15년간의 계약을 체결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주민들과의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비밀스럽게 이루어진 이 민영화 프로그램을 통하여 말레이시아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에 대한 검사, 감시, 판단 권리를 'FOMEMA'에 이관하였다.

민영화 계약에 따르면, 'FOMEMA'는 약 170만명의 합법적으로 등록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료검사를 감독하는 시스템을 채용하였으며, 매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개신된 건강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테나가니타'의 분석에 따르면, 이 민영화 프로젝트가 독점화를 수반한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라도, 외국인 노동자가 이 체계를 통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다음 사항들은 이 계획이 이주민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빠트릴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 비용 : '테나가니타'는 의료 검진 비용이 현재보다 훨씬 비싸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 비밀 유지 : 입국 관리소와 보건부('FOMEMA'의 데이터베이스와 온라인으로 연결될 예정이다.)는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에 관한 최신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이 자료를 통해, 노동자들은 HIV에 감염된 경우 추방당할 수 있으며,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차별대우를 당할 수 있다.

지난 9월 보건부 장관에 의해 'FOMEMA'의 설립이 발표된 이후, '테나가니타'는 '말레이시아 의료협회(MMA)'뿐만 아니라 'FOMEMA'와 토론을 가지고 설명을 요구했다. 또한, '테나가니타'는 10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개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인도네시아는, 최근 꾸준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

1982년부터 1992년까지 국가총생산(GDP)은 매년 평균 5.8% 성장하였는데, 이는 동남아시아 국가중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가 높은 경제성장을 자랑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정부의 독재정치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또한, 대통령의 친척들이 가장 수익성 높은 금융업, 제조업의 거대기업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지난 1996년 발생한, 국민차 사업을 둘러싼 논쟁, 수하르토 대통령의 건강진단을 위한 독일 방문, 7월 27일 발생한 자카르타 소요 등의 일련의 사건들은 국제사회에 좋지않은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 결과, 직접적인 외국투자의 유입량이 그 이전 연도에 비해 급격히 감소했다.

1997년 중반 아시아를 강타한 경제위기는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에게 어두운 경제 전망을 안겨주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통화가치가 1달러당 6,000루피라는 유례없이 낮은 수치를 기록하게 되었다. 많은 은행들이 도산하거나 합병되었고, 회사들은 파산하였으며, 대규모의 정리해고가 시행되어 실업율이 증가하였으며, 사회·정치적인 불안이 가중되었다. IMF의 43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이 제공되었나, 이러한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인권 상황은 아주 열악한 상태이며, 인권운동가들의 지속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APEC이나 ASEAN과 같은 국제회의에서, 수하르토 정부는 시위의 대상이 되곤한다.) 1966년 당시 수하르토 장군에 의해 자행된 50여만명의 대학살 이후, 새로운 체제의 정권이 수립되었다. 그 이후, 이 나라는 지금까지 엄격한 군부통치가 계속되고 있다.

1996년 7월에 발생한 폭동은, 군부로 하여금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을 야기시켰으며, 세계 인권운동가들의 주목을 끌게되었다. 인도네시아의 가장 유명한 노동운동가인 '무타르 파크파한'과 '디타 사리'는 지금까지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 동티모르의 독립 문제는 또 하나의 국제적인 관심사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인도네시아와 외교 관계를 맺고있는 국가들은 이 문제에 관해서 개입하려 하지 않는다. ASEN이나 APEC의 다른 회원국들과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 역시 자유주의 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구조

조정 과정을 밟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도네시아 경제를 세계 시장에 통합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이주민 노동자

1980년대 초반,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민 노동자에게 가장 인기있는 목적지는 사우디 아라비아 등의 중동지역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아시아 동부지역과 동남부지역 국가들은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이주민 노동자들은 이 지역으로 몰려들게 되었다. 특히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지역으로 많은 이주민 노동자들이 유입되었다. 현재, 약 195만명 정도의 인도네시아인들이 해외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이중 약 65%는 여성이다. 이 노동자들은 농업, 운송, 건설, 전력, 가스, 수도,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이 본국으로 송금하는 액수는 1996년 약 48억 달러 규모이며, 이중에서 약 15억 달러는 은행계좌를 통해 송금되고 있다. 나머지는 우편이나 인편, 혹은 그들 스스로에 의해 본국으로 유입되고 있다.

노동력의 수출이 인도네시아 경제에서 가지는 중요성은, 총 125만명의 노동자를 해외로 송출할 계획을 포함한 '제6차 5개년 개발계획(REPILITA VI)'에서 명확히 강조되었다. 만약 이계획대로 실행된다면, 20세기말에는 약 4백만의 노동자가 해외에서 일하며 85억불을 본국으로 송금하게 된다.

인도네시아 노동자의 해외이주는 다른 개발도상국과 비슷한 원인에서 비롯되었다. 즉, 자국내의 고용기회 부족으로 인해 실업인력들이 해외에서 일자리를 찾게된 것이다. 그러나 실업자들만이 해외로 나가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불안정한 고용상태나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공장 노동자와 열악한 환경에서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 역시 이주민 노동자가 될 수 있는 충분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

불균형한 경제성장 역시 중요한 요인중 하나이다. 사회기반시설이나 제조업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반면, 농업분야는 퇴보하고 있다. 농촌지역 출신 노동자들은 대부분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마치지 못한 상태이다. 게다가, 농촌출신 노동자들이 도시 유입되었을 경우 그들의 농업 관련 지식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은 그들을 해외로 눈길을 돌리게 만든다. 그리고 특히 여성들은 낮은 교육수준과 기술 부족으로 인해 가사노동이외의 직업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다.

필리핀인이나 태국인과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일자리를 찾고있는 인도네시아인들 역시

시 많은 어려움을 겪게된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해외이주의 과정에서부터 시작된다. 관료적이고 복잡한 행정절차와 부족한 정보로 인해, 이들은 해외이주 알선인들에 의해 쉽게 피해를 입게된다. 자세한 정보를 얻지 못한 대부분의 해외취업 희망자들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지나치게 많은 수수료에 대해 불평하지 않는다. 서류 처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뇌물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돈이 부족한 노동자는 알선인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런 경우 몇 년후에는 엄청난 이자를 지불해야만 한다.

외국의 새로운 직장에 적응할 때쯤이면, 노동자들은 고독감과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향수는 대부분의 이주민 노동자들이 느끼는 문제이다. 열악한 노동환경과 주거상태, 임금과 고용계약에 관련된 분쟁 등 역시 이주민 노동자들을 짓누르는 문제들이다. 가사 노동자들은 이보다 더 보호받지 못하며, 다른 어떤 이주민 집단보다 많은 착취를 당하고 있다. 그들이 고용주의 가정에서 함께 생활한다는 것은, 다른 노동자들과 격리되어 있으며, 비인간적인 노동환경이나 성적, 육체적 학대의 경우에도 어떠한 증언이나 보호자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7년 11월,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한 인도네시아 출신 가정부가 그녀의 고용주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사형에 처해질 상황에서 간신히 벗어났다. 그녀는 외교적인 중재와 국제적인 항의 덕분에, 징역 1년형으로 감해지게 되었다. 또한, 가사 노동자에 대한 학대행위가 작년에 싱가포르에서도 발생하였는데, 고용주가 인도네시아인 가정부에게 개의 배설물을 먹도록 강요했던 일이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의 착취나 학대행위 이외에도, 가사 노동자들은 학대행위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정책이나 법률로부터도 배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주민 여성을 위한 지원단체인 'Solidaritas Perempuan'에 따르면, 1991년부터 1997년까지 이주민 여성과 관련되어 발생한 피해는, 폭행 515건, 사망 552건, 산업재해 9,094건에 이른다. 그러나 노동부가 이주민의 학대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쟁점

A- 노동력 수출과 관련된 정부 정책

노동력 수출과 관련된 인도네시아의 정책은 오직 경제적인 이윤에만 기반을 두고 있

다. 그러므로, 이주민 노동자의 보호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제6차 5개년 개발계획(REPELITA VI)'가 확실한 예이다. 이 계획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해외로 내보낼 것이며, 노동시장의 전망은 어떠할 것인지, 그리고 해외의 노동자들이 국내 경제에 얼마만큼의 기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제6차 5개년 개발계획'에서는 또한 가정부 등 미숙련 노동자의 수를 점차 줄이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의 배경이 되는 정부의 논리는, 해외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대부분이 이러한 미숙련 노동자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가사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점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노동력을 수입하고 있는 국가들과 쌍무협정을 체결하여, 자국 노동자들이 처벌당하기 보다는 본국으로의 송환을 통해 보호받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다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미숙련 노동자들 역시 그들의 가족과 스스로의 미래를 위해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주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영사관을 통해 해외 노동자들이 어떠한 노동단체나 지원단체와 연계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다는 것이다.

그중 한 예로 홍콩에서는, 인도네시아 노동자는 본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영사관의 지시에 따라, 대부분의 이주민들이 노골적인 착취나 학대에 대해 도움을 청하거나 항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B- 관료적인 알선제도와 부패한 아주 대행사

이주민 노동자들이 해외로 출발하기 전에 겪게되는 부패하고 기회주의적인 절차들로부터, 그들의 불행이 시작되고 있다. 직업소개소들이 가장 먼저 해외 아주 희망자들로부터 이익을 챙기게 된다. 브로커들은 아주 희망자들의 경력을 조작하며, 여권, 계약서, 기타 노동 및 여행관련 서류들 역시 위조한다. 이중 계약은 인도네시아 이주민 노동자들이 흔히 겪게되는 문제중 하나이다. 예를 들면, 작업의 종류, 봉급, 근무일, 수당 등을 명시한 계약서는 상대국가에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제조업 분야에서 근무하기로 등록된 이주민들도 결국 가사 노동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주 희망자가 알선료를 지불하지 못할 경우, 심각하면서도 전형적인 곤란에 처하게

된다. 그들은 채무 계약서에 사인할 것을 강요당하며, 이후 그 대행사는 원금의 세배나 되는 엄청난 액수를 봉급에서 공제한다. 몇몇 노동자들은 처음 6개월 동안 빚을 갚아야만 하는데, 그런 경우 이기간 동안은 아무런 수입도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출발전 교육은 형식적으로 이루어 진다. 노동자들이 일하게 될 국가에 대한 정보나 작업의 특징에 대해서는 거의 알 수 없으며, 대신 고용주에 대한 의무나 입국심사 기관에서 어떠한 식으로 질문에 답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 등에 대해서만 배우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출발전 교육은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기본적인 권리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출발전부터 그들을 위축되게 만드는 것이다.

출발에 앞서 지원자들은 임시 대기소에서 매우 열악하고 비인간적인 상황에서 지내게 된다. 여성의 경우, 이것이 성적학대의 함정이 되기도 한다. - 대행사, 정부관리, 보호인 등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사례에 대한 보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 비자가 발급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신체적, 성적 학대에 쉽게 노출된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이러한 학대를 당하고도 가족들이 수치스럽게 생각하거나, 많은 돈을 들여서 얻게된 해외취업의 기회가 좌절되는 것이 두려워서 조용히 넘어가길 원하는 것이다.

C- 작업중의 어려움

이 단계는 상대국가의 상황, 문화, 작업의 종류, 언어 등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민 노동자들에게 악몽과도 같다. 많은 인도네시아 이주민들이 고용주로부터 2교대 근무를 강요당하고 있다. 장시간의 노동, 저임금, 여권과 계약서의 압수, 기본적인 권리의 박탈 등이 이주민 노동자들이 겪게되는 일반적인 문제들이다. 게다가, 고독감과 고향의 가족들에게 발생하는 잠재적인 문제들이 많은 이주민들을 우울하고 의기소침하게 만든다.

이주민들이 고용주와의 사이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그들은 아무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국의 알선 / 대행사는 이주민 노동자들이 그들의 고용주와의 사이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거의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다. 그대신, 그들은 오히려 고용주의 편에서 노동자들을 협박하기도 한다. 대행사들은 노동자들의 권리보다 사업의 이익을 유지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주민들이 대사관에 가게되면, 그들은 문제를 일으켰으며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미지를 실추시켰

다는 이유로 비난받게 된다.

일부 이주민들은 결구 비정부기구나, 그들을 돋고자 하는 기독교 단체를 찾아가게 되지만, 자국 정부의 이미지를 손상했다는 구실로 정부기관의 관리대상이 되고만다. 만약, 노동자가 노동허가서를 지참하지 않은 상태로 고용주로부터 도망치게 되면, 그 때부터 그는 불법체류자가 되어 다른 형태의 착취를 당하는 처지가 된다.

D- 종교, 문화, 사회적인 문제

이슬람교도인 인도네시아 이주민과 타 종교를 믿는 고용주 사이에서는, 문화와 종교가 독특한 문제들을 야기하기도 한다. 말레이시아에서 일하는 가정부의 경우가 가장 심한 문제를 일으킨다. 예를 들어, 미용실에서 일하는 세 명의 이슬람교 여성은 기도 시간에 기도를 드릴 수 없었다. 두명의 다른 여성들은 기도를 드릴 수 없고 돼지고기를 요리하라고 강요당하여 결국 도망치고 말았다. 이외에도, 특히 가정부의 경우 사회적인 생활이 그들의 고용주로부터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한 인도네시아 소녀는 고용주의 어머니를 살해했는데, 그 이유는 그 소녀가 몇 개월간의 감금생활과 가혹한 대우로부터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주민 지원단체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특히 중국인 고용주 밑에서 생활하는 인도네시아 가정부의 경우, 주인이 외출할 때 집안의 모든 문들을 잠궈 놓는다고 한다.

E- 밀입국자

대부분의 국가에서, 밀입국자들에 대해서는 강경한 정책과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밀입국자의 검거를 위한 불시단속과 구금은 흔히 행해지고 있는 일이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아주 근접해 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로의 밀입국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불시검문과 단속에서 체포된 밀입국자는 교도소로 보내지게 되고 국제적인 모니터링으로부터 배제되어 버린다. 그러나, 정부와 대사관에서는 합법적인 이주민의 경우가 아닌, 이러한 상황에서 체포된 이주민들에 대해서는 모른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 응

'인도네시아 이주민 노동자 센타 (CIMW)'는 인도네시아 이주민 노동자들이 처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국내, 지역, 국제적인 수준에서 이러한 문

제들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부족한 상황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 인도네시아의 비정부기구들과 'CIMW'와 관련된 이주민 지원단체들은, 상대국가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알려내기 위해 연대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CIMW'는 현재 '아시아 이주민 포럼 (MFA)'과 같은 기존 네트워크의 회원이다. 이 네트워크는 국가내 혹은 지역내의 지원단체 - 홍콩의 '아시안 이주민 센타', 말레이시아의 '테나 가니타', 한국의 '안산 이주민 센터'와 같은 지원단체들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홍콩에서는, 최초의 인도네시아 노동자 조직이 1996년에 만들어졌다. 다른 단체나 비정부기구들의 도움을 받아, 이 모임은 세미나, 컴퓨터, 부기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영사관에서 노동자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노동자들이 조직화되거나 이주민 지원모임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모임은 중요한 돌파구중 하나였다.

인도네시아 이주민의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공식적으로 보고되는 학대나 착취의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다. 물론 밀입국자 역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착취, 학대의 사례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이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에 무감각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오직 경제적인 이익과 자국 경제발전에 미칠 영향만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주민들의 권리는 항상 정부로부터 무시당해왔다. '제6차 5개년 개발계획'에서 이주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대처는 수동적이었으며, 다소 모호했다. 필요한 일자리나 새로운 고용정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숙련 노동자들을 자국내로 귀환시키는 것은 불법 출국자의 증가와 같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현재의 상황과 정책의 추세를 고려하면, 인도네시아 이주민들은 결코 자국 정부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여러 지원단체들이 인도네시아와 상대국 정부에 대해 압력을 행사한다거나, 국제회의에서 이주민의 권리 보호를 인준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관련 정책의 채택과 실천을 요구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벌여나가야 한다.

방글라데시와 이주노동자 - AMY YEARBOOK 98'

방글라데시는 겨우 55,000평방 마일밖에 안되는 작은 나라지만 인구는 1억 천 2백만 이상이다. 이 나라의 독립 이래 13년 이상을 군부가 통치해왔다. 결과적으로, 민주적인 제도들은 아직 취약해서 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엔 역부족이다. 상당수의 아동 노동자들이 봉제공장에서 일하는 반면 수 천명의 어른들은 실직상태이다.

이주 노동자들; 실제 단면들, snap shot

방글라데시에서의 이주는 1940년대 초에 주로 영국에 정착할 목적으로 시작되었다가 1960년대에 일자리 때문에 재개되었다. 전례없는 엄청난 수의 이주자들이 1970년대 중반 산유부유국인 중동으로 향했다. 자국의 실업문제와 가난 때문에 국외의 일자리와 고임금에 매력을 느낀 교육받은 젊은 방글라데시인들은 해외 일자리를 위해 자신의 삶의 기로를 바꾸었다. 이제 방글라데시 이주민들은 아시아, 중동, 남아프리카, 유럽 등지에서 일하고 있다. 1976에서 '77년 사이 2백만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조국을 떠났고 1991에서 '96년 사이 매년간의 이주자 평균수치가 2십만에 달한다. 최근 경향은 아시아쪽으로의 이주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93년 이래로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인기있는 목적지이고 말레이지아가 쿠웨이트와 오만(Oman)을 제치고 2위로 부상하고 있다. 싱가폴, 한국, 부루네이로의 이주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이다.

방글라데시 이주 노동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들;

- a) 고용주의 여권 압류
- b) 이민 담당국의 실수로 인한 여권 분실
- c) 고용주가 제때 아이디 카드를 발급해 주지 않음
- d) 일자리를 옮길 수 있는 기회 부족
- e) 중간 소개인들의 착취
- f) 임금 체불 및 미불, 부당한 액수
- g) 거취와 의료혜택에 있어서의 부당한 대우
- h) 이중 계약 (고용주만의 계약서 따로 사용)
- I) 소규모 사업장에서 고용주나 고용주 가족에 의한 심한 대우, 특히 육체적인 상해나 성적 학대등

j) 경찰의 괴롭힘

쟁점 사안

정부 정책

정부는 이주정책에 있어, 1960년대의 소극적인 태도와는 달리 적극적인 태도로 변하고 있다. 해외 이주의 확대가 중요 정책 사안이 되고 있는데, 실업률의 감소, 그와 함께 임금문제 해결, 기술이동, 노동력을 받아들이는 나라와의 강력한 경제적 정치적 연대, 이주자들의 송금액 활용 등이 주요 목표가 된다. 상이한 여러 기관들이 이 정책의 실현을 돋기 위해 발전되어왔다. '방글라데시 노동력, 고용, 양성국'(The Bangladesh Bureau of Manpower, Employment and Training/BMET)이 1976년 해외 이주 사업 관리를 위해 설립되었다.; 노동 시장과 노동자 복지를 관리하기 위해 주요 이주국에 관련 수행원labor attaches들도 배치했고, 시장권리의 확대를 위해 법령을 추진해오고 있는 중이다.

1990년 11월 15일, "임금노동자 복지기금"이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만들어졌고, 이 기금은 정부가 설립한 '감독위원회' the Board of Directors가 주관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기본 적립금 Tk 5,000 crore를 BMET를 통해 이주국에 있는 방글라데시 대사관에 기부한다.

BMET는 그 기금을 감독하고 다음의 책임사항들을 가진다.

- a) 일자리를 위해 해외로 나가기전 노동자들에 대한 보고
- b) 사망, 신체일부 상해, 사고나 일시적 실업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험정보
- c) 방글라데시에 살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의 자녀 교육
- d) 이주 노동자들의 가족을 원조하는 법규정
- e) 해외 여행을 하려는 노동자들간에 잡지, 신문, 라디오, TV를 통한 안내 프로그램 증대
- f) 사망에 대한 보상책 찾기
- g) 공항에서 이주 노동자의 유해를 받고 법적기소의 신속한 심리
- h) 관련 대사관과 고등위원회 High Commissions 와 사망자 처리에 관한 의견 교환
- I) 사망한 이주 노동자의 묘지 마련을 위해 사망자 가족에게 기부금 지급

정부는 귀환하는 이주자들에 대해 포괄적인 재활 시책을 갖고 있지 않다. 이주자들의 자녀를 위한 교육 기금이 때로는 일반인 교육시책에 쓰이는 등 다른 용도로

쓰이며, 정부관리들에 의해 다른 지역 문제에 그 기금이 활용되기도 한다.

법률과 정책사안들

1982년의 '이민법령'이 방글라데시의 기본 이주법령이며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규칙과 조례 등을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 이민 장려, 송출기관들에 대한 감독과 이주 단속 등 외에도 이 법령은 송출비용이 설정되어 있다.

사회·경제적 상황

Ain O Salish Kendra(ASK)가 행한 이주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많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가 이주 과정에 쓰여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주를 결심한 노동자들은 그들의 땅을 팔거나 높은 이자로 대출을 받거나 한 달에 10%의 이자를 무는 경우도 있다. 해서 돈을 마련한다. 그들의 지출은 결혼과 같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를 치루거나 빚을 갚아나가는데 거의 할당된다. 그래서 이주한다고 해도 그들의 기본 생활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송출 형태

1976년 이래, 정부는 외국에 있는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의 고용에 관해 다음 과정들을 채택하고 있다.

- 정부를 통한 송출: BMET는 노동부 Ministry of Labour & Manpower 산하 해외 고용 담당부서이다. BMET는 외국의 고용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 일련의 사항들에 책임을 진다. 이주 노동자들의 2%가 약간 넘는 수가 이런 통로로 해외로 송출된다.
- 전문 회사를 통한 송출 public limited companies: '방글라데시 해외 고용과 서비스 전문사'(BOESL)는 숙련된 노동자들을 다루는 유일한 기관이며 말레이지아로 보내지는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 행정조직으로서의 활동을 한다. 0.4%이하의 이주 노동자들이 이러한 통로로 보내어진다.
- 송출 사기관들: 외국 고용주들의 일련의 요구사항을 받는 사적 영역의 송출허가 기관들이 402여개나 있다. 이 송출 기관들은 정부에 의해 사업비가 책정되고 정부로부터 최상의 보조금을 지급받는다. 1976년 이래로 약 43%의 이주 노동자들이 이러한 기관들을 통해 송출되었다.
- 개별적 관계: 노동자들이나 그들의 친척들이 해외에서 일하는 경우 또한 고용주의 직접적인 연결이 가능하다. 고용계약과 고용기간등이 BMET에 의해 검증받은 후 이주결정이 내려진다. 이런 방법이 이주 노동의 가장 큰 수치를 기록한다.

타이 억류자들

50,000명에 달하는 방글라데시인들이 최근 타이에서 억류되고 있다. 억류자들의 대부분이 말레이지아 정부가 밀입국 노동자들에 대해 강제조치를 취했을 때 말레이지아로부터 밀려나온 노동자들이다. 이 억류자들 중에는 관광객으로 타이에 와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 말레이지아로 가려는 사람들도 있다.

Sabur M.A.는 타이에 억류중인 노동자들이 당면한 문제점들을 수용소와 자연되는 본국 송환의 측면에서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타이 정부는 억류자들에게 음식과 거주지와 교통편을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비좁은 쪽방과도 같은 장소(어떤 곳은 한 방에 150명에서 180명이 함께 지낸다)나 음식(어떤 억류자는 최소한의 영양공급도 받지 못하고 있다)의 문제가 심각하다. 대부분의 억류자들이 영어나 타이말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을 설명하기가 불가능하다. 보통 억류자들은 4개월에서 6개월동안 이런 상태에 있게 된다.

억류자들의 본국 송환은 꽤 시일이 걸린다. 우선, 억류자들은 그들의 친척이나 그들을 보낸 기관에 200달러를 항공권이나 기타 경비조로 보내야만 한다. 이 점이 그들의 송환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그 다음 단계는 보다 수월하다. 일단 NGO조합으로부터 돈과 연락이 온다면 항공권이 준비된다. 이 단계는 7일에서 14일이 경과된다." (Sabur, M.A., "방글라데시 이주 노동자들의 양상," Asian Migrant, Vol. 10, No. 2, 1996, p.64)

방글라데시 대사관은 가끔 수용시설을 방문함으로써 억류자들을 고무하고 있다. 대사관은 여권을 분실한 사람들에게 여행 서류를 발급해준다. 하지만 어쨌든 대사관측이 억류자들의 비행기삯을 마련해 줄 수는 없으므로 여전히 송환에 있어 비행기삯이 가장 큰 문제로 남게된다.

해결 노력들

1993년에 ASK-1986년 설립-가 이주 노동자들의 권리와 보호차원에 대해 방글라데시 정부에게 전언을 제출했다. 1995년엔 같은 사안에 대해 외무장관을 만나 보았고 1996년 12월 23일, 말레이지아에 있는 이주자들을 위한 이주민 정책의 부정적인 효과를 알리기 위해 그 정책을 요약정리했다.

1997년 12월 19일, 내각은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권리보호에 관한 UN 협약을 비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사안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4/ 아시아의 위기가 이주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렉스 바로나(아시아 이주노동자 센타)

"IMF가 없었더라면, 아시아의 상황은 아마도 지금보다는 나았을 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그 중 상당수가 IMF에 의해 기인된 것처럼 보인다."
(전 미 국무장관 조지 슬츠)

1997년 하반기부터 시작하여 아시아 지역을 휩쓸고 지나간 전례없는 재정, 경제적 위기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만은 아니다. 7월 2일 태국의 바트화 평가절하는 그다지 큰 일이 아닌 사소한 일이었다. 그 영향은 아시아와 전세계에 계속 파급되고 있다.

아시아의 위기를 야기시킨 조건은 이들 국가에 의해 무모하게 추진된 몇 년간의 신자유주의 정책(엄중한 개인화와 자유주의 전세계 자유시장 경제하에서의 통합)에 근거를 둔다. 아시아에서, 각국이 이 새로운 100년의 초기에 "다음 주도세력" 혹은 "그 지역 중심지"가 되기위해 서로 겨루는 것처럼, 1990년대는 끔찍한 경쟁의 시기였다; 신 자유주의 정책들이 마치 내일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추구되어졌다. 따라서, 한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같은 신흥개발도상국들은 스스로를 아시아의 중심의 위치에 두었으며, 무엇보다도, 세계적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감소시키기 위해 법안들을 개혁하였다. 한편, 개발도상국들은 "필리핀 2000", "말레이시아 2010"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채택하였다; 심지어 인도는 1997년 3월 "4년후 경제적 대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선언하였다. 이주자들을 보내고 받아들이는 양국가에서, 무역장벽은 무너지고, 노동자, 특히 여성 노동자들은 터무니없이 싸게 고용되고, 외국의 주로 투기성이 있는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온갖 종류의 동기유발이 제안되고 있다.

인위적 기적은 1997년 드러나기 시작했다. 태국 화폐와 경제의 약화를 1996년 이래

로 감지해 온 투자자들은 1997년 5월 중순 바트화를 공격했다. 7월 2일 정부는 바트화를 변동시세제로 한다고 발표했다. 공격은 광범위해졌고, 지역적 위기를 야기시키면서 전역에 걸쳐 효과적인 평가절하를 이끌었다. 10월 7일경, 바트화는 U.S. Dollar에 대해 44% 정도 곤두박질쳤고, 인도네시아 루피아는 38%, 말레이지아 린지트는 21.5%, 싱가포르 달러는 7.2% 떨어졌다. 1997년 말경, '아시아 지역의 영향'이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경제를 황폐하게 했다; 심지어 싱가포르와 홍콩도 예외는 아니었다. 전세계에서 11번째 큰 경제대국인 한국은 봉괴의 시점에 와있다. 위기는 오랫동안 절질 끌어온 일본 경제의 경기침체에 의해 더욱 악화되었다. 1997년 위기는 그 규모와 깊이면에서 전례없는 것이었다. 말레이시아의 수상인 마하티르는 6개월간의 위기가 10년이상 동안 힘들게 벌어들인 경제적 이득을 쓸어가 버렸다는 사실에 비탄해 했다. 이와같은 위기의 최악의 효과가 1998년과 1999년에 나타나리라 여겨진다; 아시아 국가들은 그들 자신의 "기적의 2000" 꿈뿐만 아니라 그들의 경제를 재건하고 복구하는데도 향후 5년 정도는 걸릴 것이다.

이와같은 상황에서의 주요 내용 한 가지는 구조조정 프로그램 계획이나 지구촌의 자유시장경제화, 신자유주의,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세계 무역협회, APEC 등의 계획들이 그러한 거대한 위기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미화 7천억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자금을 마련해 준 이후 소위 "구제자"로 나타난 것이다.

최근의 대응과 지난 경험

"만약 IMF가 없다는 아시아 문제도 없을지 모른다. 아마도 거기에는, 태국처럼, 개별적인 문제점들은 있을지도 모르지만, 아시아 전체의 거대한 위기는 아닐지도 모른다. (노벨 수상자 밀튼 프리드만)

혼란은 이 세계화 시대에 국가경제의 극도의 취약성을 드러낸다. 유사한 위기가 과거 개개의 국가들에도 영향을 끼쳤다.(e.g. 1980년대 중반의 필리핀은 마르코스 독재의 몰락을 야기시켰다); 그러나, 이것들이 전지역에 확산되지는 않았다. 국가 경제를 세계자유시장체계로의 통합이 가중되었기 때문에 한 명의 실수는 전체의 재난이 된다.

아시아 지역의 위기는 1995년 멕시코 경제의 봉괴와 상당한 유사성을 지닌다. NAFTA(멕시코와 미국, 캐나다를 단일 무역지역하에 묶어둔다)가 시행된 이후 멕시코의 경제는 봉괴되어 버렸다. 통화는 그 가치를 99.9%까지 상실해 버렸고(25 멕시코 폐소에서 US dollar당 8,500까지; 정부는 후에 멕시코 통화 가치를 재조정했다). NAFTA 시행 일년 이내에 100만개 이상의 직업이 없어져 버렸다. 그 위기는 확산되어서 라틴 아메리카와 심지어는 아시아까지 위협하였는데, 그때 그런 상황은 이른바 "데낄라 효과"로 불려진다.

아시아에서는, 1989년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기구(APEC) 창립 아래로 그와 유사한 자유시장 세계화 과정이 강도를 더해가고 있었다. 1994년, APEC의 "2020 계획"이 채택되었고, 이것은 WTO의 자유 무역 협정과 관련하여 2020년까지 무역장벽을 없앤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1996년, "APEC에 대한 마닐라 조치 계획"은 회원들의 위임을 실질적인 목표와 예정으로 번역한 것이다. 따라서, APEC 회원국들은 (특히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 좀 더 자유화하고, 개별화하고 있으며, 노동과 사회정책(예, 노동의 융통성 기획안을 재정하고, 사회 보조금을 삭감하는 것)에 대한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1997년경, 이들 아시아 국가들은 봉괴되었다. 1995년의 멕시코처럼, 한국과 인도네시아, 태국은 이 곤경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데(1170억 이상의 US달러에 대해), 단지 그들이 그들의 경제적 주권을 회복하고 난 이후에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는 전혀 새로울 게 못된다. IMF/WB 강요에 의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이나 조건부 대출은, 1980년대 초 제 3 세계 국가들(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을 황폐화시킨 빚의 위기상황에서 절정에 달하게 된다.

외국인 노동자들과 사회단체들은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에 실질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같은 종류의 세계화에서 야기되는 빈곤이나 부의 불균형, 경제 구조조정 등은 오늘날 노동의 대량수출과 수입 이면에 작용하는 "밀고 당기기"식의 주요한 힘을 창출할 수 있다.

그 절대적인 수와 그들이 다니는 직업, 정부와 노동 대행 기관의 기회주의적인 방침들에 의해, 외국인 노동자들, 특히 여성들과 밀입국자들은 상당히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떤 위기에 의해 나타나는 가장 직접적이고, 즉각적이며,

고된 효과를 바로 참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상황은 어떤 주어진 시기에 노동자들의 상황이 끝이 최악임을 나타낸다.

“경제적 위기로 배운 주요 교훈은 외국인들이 이제는 단순히 우리 통화를 평가절하 조치를 함으로써 우리 경제를 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들은 우리 재정의 절반을 훔쳐갔다.”(말레이지아 수상 마하피르)

현재 아시아의 위기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사악하고 깊은 심해” 상황으로 몰아 넣었다. 노동자 파견 국가들에서는(예,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에게 직면한 “사악함(곤경)”이 최악의 경우이며, 여전히 더욱 깊은 곳으로 아시아 경제 위기는 실업문제와 고도의 통화팽창, 공장의 붕괴, 경기침체 등으로 빠져들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식량부족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폭동에 의존하고 있다; 사회적 불안이 수하르토 대통령의 하야를 가져온 것이다.

1998년 말경에는 경제 위기의 결과로 적어도 354만 명의 노동자들이 추가로 직장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해고되고 절망적인 노동자들은 점점 더 생존을 위해 해외취업으로 눈을 돌릴 것이다. 위기로 혼란스러운 정부들은 직장을 제공하고 외국과의 거래를 창출함에 있어서 노동 전문가에게 의존할 것이다.

수혜 국가들에서는(한국, 일본, 말레이지아, 태국, 싱가포르), 외국인 노동자들이 문자 그대로 깊은 곤란함에 직면해 있다. 그들은 수 만 명씩 체포되거나 강제로 국외 추방을 당한다. 말레이지아, 싱가포르, 태국에서는, 정부가 외국인들을 대거 강제 추방시키는데, 특히 밀입국자들의 경우, 의존하고 있다. 933,000명 이상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러한 위기 때문에 1998말경에는 추방되거나 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방된 노동자들은 고국에서도 환영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필리핀 정부는 위기로 해고된 필리핀 노동자들이 필리핀으로 돌아가는 대신에 다른 나라에서 직업을 구하도록 권하고 있다. 결국 돌아온 노동자들의 경우는 아무런 직업도 없고 재산이나 경작할 땅도 없으며(해외취업을 위해 팔아버린 경우), 엄청난 빚과 부양할 가족만을 짊어진 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게 될 뿐이다. 수혜 국가에 남도록 허용된 노동자들은 3D 업종(예, 말레이지아)에 재취업된다. 많은 노동자들이 그들의 임금이나 이익 면에서 속임을 당하거나(예, 한국), 직장을 찾기가 어렵다(예, 일본, 한국).

그러므로 아시아 지역의 이와같은 혼란은 노동자 파견국이나 수혜국 양쪽 모두의 노동자들을 힘들게 하는 “이중 압박”을 야기시켰다. 1998년 말경이면 447만명의 외국인 노동자와 그 지역 노동자들이 이와같은 위기에 의해 해고 당하게 될 것이다. 이들 수 백만 명이 갈곳은 어디인가?

외국인 노동자들, 특히 밀입국자들은 수 백만 명으로 그 수가 증가했다. 수입국들이 노동시장(예 3D업종)에서의 수요를 충당하고 그 지역 노동자들의 임금을 감소시키기 위해 경기 호조기때 그들을 격려하고 너그럽게 대했기 때문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법적으로 최소한의 보호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력 부문에서 가장 공격받기 쉬운 대상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고용안정이 되어 있지 않고, 수입국의 사회보장이나 건강문제, 또는 상해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들은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주로 얼굴없는 노동자들 혹은 경제적 도구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외국인이고, 비인간적인 처우를 당해 왔으며,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대개 그들의 인권이나 노동권은 인정되지 않고, 보호되거나 존경받지도 못한다.

일년 후 - 3)

다음 사항은 1998년 5월 31일 노동 중재 위원회에 의한 보고를 토대로 한 경제위기의 즉각적인 효과를 몇가지 제시한 것이다.(표 1참조: “아시아 위기의 즉각적인 효과, 1998년 5월 31일”)

3) 일년 후 : 아시아의 위기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
렉스 바로나, 아시아 이주 센터 담당이사

1998년 5월 31일

1. 100% 해고

홍콩 경제와 자국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 증가하는 해고율, 특히 건설, 식당, 호텔, 재정 서비스 사업분야; 1997년 6월부터 1998년 5월까지 6000명 이상이 경제 위기로 인해 해고 되었다. 예, Cathay Pacific(870; 800명 이상을 목표로 함), Peregrine(275), British American Tobacco(156), Hutchison Telecommunications(600), Maria's bakery(405); 3,300이상의 백화점 고용인들이 1997.11에서 1998.4에 해고되었다.(Yao Han의 1600명과 Wing On의 270명 포함); 호텔 사업 조합은 1997년 6월 아래로 400 이상이 해고된 것으로 본다.

- 적어도 10개 이상의 회사들이 1997.6에서 1998.5에 와해되었다.; 예, CA Pacific, Peregrine, Yao Han Dept. Store, Maria's bakery, 그리고 여러 증권 회사들

- 이율의 증가; 중산층과 하층계급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짐, 주택비용과 전세비용이 더욱 많이듦; 정부 보조가 필요하다.

- 통화는 안정세로 남아있다; 홍콩 SAR과 중국의 지도층은 US Dollar당 홍콩 Dollar의 안정세 유지를 간청했다.

- 증가하는 실업; 1998.5에 3.9%에 도달했으며, 이는 14년만에 최악이다; 그러나 은행들은 “이것이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좋으며, 이에따라 SAR의 노동비용을 삭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정부에서는 경제성장이 3.5%까지 점차 감소될 것으로 여긴다(1997년 5.3%에서 시작); 5월 27일, 정부는 전반기 GDP성장을 마이너스가 될 것이며, 이는 13년만에 처음이다; 국무총리에 의하면 6월 5일 성장을 낮을 것으로 예측한다.

홍콩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 1997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홍콩의 외국인 가정부가 22,000명에서 70,000명으로

<출처: AMC 정보은행, 1998/6>

국가	주식시장 (하락률) 9/6'98/5	환율(최악) 9/6'98/5	IMF구제금 (단위 US\$십억)	경제성장(GDP)		실업률 1998 예상	국내노동자 (아시아 위기로 인한 실직예상) 9/6'98/12	외국인노동자 (아시아 위기로 인한 추방이자) 9/6'98/12
				95'97 평균	1998 목표			
홍콩	-21.19%	0	불가(N.A.)	5.0%	3.5%	2.9%	4.0%(14년간 최악. 98/5 실업자 133,600)	6,000해고 (97/6~98/5)
인도네시아	-40.64%	-85% (98/1)	43.0	7.3%	-10%	14.2%	16.0%(98년 실업자 천오백이십만 예측)	200만 해고 (97/6~97/12)
일본	-21.24%		불가(N.A.)	2.0%	2.0%	3.4%	4.3%(53년 이래 최대)	불가
한국	-39.27%	-55% (97/12)	57.0	7.2%	<1.0%	2.6%	6.5%(80년 이래 최대. 98년 실업자 200만 예측)	27,600 해고 (97/6~98/1)
말레이시아	-52.97%	-48% (98/1)	없음	8.6%	2.0%	2.5	3.7%(98년 실업자 50만 예측)	1만 노동자 해직(97/6~12): 25,860 해직(98/1~5)
필리핀	-41.09%	-43% (98/1)	없음	5.2%	3.0%	7.9	8.4%(98년 4월 430만 실업자)	1,015백만 해고 (97/4~98/4)
싱가포르	-29.29%	-19% (97/12)	불가	7.8%	2.5~4.5%	1.8%		불가
태국	-52.03%	-54% (98/1)	17.2	5.2%	-3.0~3.5%	3.0%	6.0%(98년 180만 실업자 예측)	20만 공무원 해고 추방(97/6~98/1): 98년 30만 추방

아시아 위기의 즉각적 효과 (1998년 5월 31일)

- 1998년 3월 IMF 관리 하에 필리핀에 US\$1.6억의 차관이 스텔드바이신융합으로 제공되었음
- 1998년 아시아 7국(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한국, 홍콩 등)의 예상 2400만 실업자 중 210만은 홍콩과 한국임. 1997년 6월 한달간 354만 이상의 자국내 실업자 발생(인도네시아 2108만, 1998년 연말까지 933,000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해고 혹은 추방될 것으로 보여짐)

3배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같은 해 10월 21일, 민주당은 “나는 건설업 외국인 노동자의 수입을 저지하기 위하기 위하여 직업을 가져야 한다.”라는 서명 캠페인을 시작했다.

● 12월 17일, 정부는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노동인력 추가수입계획의 유지와 더불어, ‘건설 노동인력 수입계획(CLIS)’의 채택을 발표했다. CLIS는 1998년 3월부터 발효되었다. 이 두가지 계획은 쿼터가 정해지지 않았으며, 현재의 쿼터 정책과 뚜렷한 차별을 이루었다. 이 계획에 대해서 지역 노동조합들은 거세게 반발하였다.

● 2월 26일 임시의회에서 권리에 관한 법률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권리법 수정안(1997년 주권이양 이전에 만들어진)을 폐기시켰다. 진보적인 주권이양 이전의 노동관계법들은 이미 지난해에 폐기되어버렸다. 3월 19일 노동부는 “지역 노조와 이주민 단체들의 수년에 걸친 투쟁이후의, 최대 노동시간을 고려한 입법”이라고 발표하였다. 어떠한 대량 추방도 경제위기에 원인을 돌릴 수 없다. 그러나 입국 사무소는 경제위기로 인하여, 27,200명의 외국인 가정부가 1997년 7월부터 1998년 3월 사이에 추방당했다고 발표하였다.

● 5월 23일 정부는 6월 6일부터 발효될 새로운 법률하에서, 외국인 가정부와 그들의 고용주 사이의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한 새로운 필요조건들을 발표하였는데, 외국인 가정부를 위한 이 기준노동계약에는 그들이 지켜야 할 가정내에서의 의무와 고용주에 의해 제공되어야 하는 숙박시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홍콩정부는 이 계약이 앞으로 분쟁들을 줄여줄 것이라고 희망하였다. 정부는 5월 25일부터 외국인 가정부들이 매년 갱신할 필요없는, 2년 기한의 노동비자를 발급받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 올해 노동절 기념식에서, 이주민 단체들은 필리핀, 스리랑카, 인도, 인도네시아, 그리고 타이대사관을 항의방문하여 시위를 벌였다. 시위자들은 UN 이주민 노동자 협약의 준수와 이주민 노동자 권리의 보호를 요청하는 연대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 5월 24일 인도네시아 출신 가정부들은 파렴치한 알선업체들을 폭로하였는데, 이들은 불법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낮은 임금을 지불하였으며, 이들 가정부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여왔다. 또한 이들은 대사관에서 지난 몇 년간 저질러온 불법적인 관행에 대해서도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입국 관리소에서는 이들 알선업체에 대한 불시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더 많은 인도네시아인들에 대한 피해사례가 밝혀지게 되었다.

● 1997년 12월 이후, CLIS에 대한 지역 노조들의 반대 또한 더욱 거세졌다. 그들은 노동절 집회를 비롯하여 많은 집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사안은 5월 선거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5월 24일 홍콩 SAR은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를 개최하였는데, 지역 노조 및 그들과 연대한 정당들도 여기에 참여하였다.

2. 인도네시아

경제와 노동자에 미치는 영향

작년 한해동안 주식시세는 41%가 감소하였으며, 1998년 1월에는 루피화가 1달러당 15,500루피까지 폭락하였다. 작년 11월 5일, 정부는 매우 강경한 응자조건으로, 430억 달러의 IMF차관을 도입하였다. 급격한 평가절하로 인한 외채부담의 증가로, 1998년 4월 현재 총외채는, IMF 차관도입액의 3배인 1337억 달러에 달한다. 1997년 후반, 정부는 국민들이 지방으로 돌아가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교통요금을 70%로 인하하였으며, 40,000여 가정으로 대상이 확대된 농촌 응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의 비상경제계획을 실시하였다.

● 1997년 12월, 전문가들은 실업과 경제난이 노동조합을 더욱 독립적이고 투쟁적으로 만들것이라고 예측하였다.

● 식량부족과 높은 물가는 폭동을 유발하였다.

● 1998년의 1인당 국민 총생산은, 작년 1200달러에서 300달러 수준으로 급락할 것으로 예측되며,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1180억달러에서 170억달러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고 추정되었다.

● 1998년 1월, 군 사령부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경제위기로 인해 200만 명이 직업을 잃었다고 추정하였다.

● 1998년 1월, 286개의 상장기업 중에서 단지 22개만이 부채 지불능력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4개의 기업만이 5억달러 이상의 자본금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 1998년 3월, 사회적 불안과 학생의 시위는 자카르타를 포함한 전국 각지로 퍼져나갔으며, 20,000개 이상의 중대가 수도에 배치되었다. 같은 달, 꼭두각시 국회에서는 수하르토를 그의 7번째 5년 임기의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는데, 그는 이미 32년째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

● 4월 1일, 말레이시아로부터 강제 추방당한 42명의 인도네시아인들이, 총격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약 100여명의 다른 추방자들 역시 말레이시아 안전부 요원들로부터 폭행과 고문을 당하였다고 주장했다.

● 5월 4일, 정부는 IMF 음자조건에 따라, 가솔린(71%), 등유(25%), 전기, 운송요금 등을 인상하였다. 예단, 자카르타 등지에서 폭동이 발생하였으며, 학생 시위대들은 더욱 증가하였다. 군에서는 시위자들이 거의 무정부 상태이며, 엄하게 진압할 것이라고 밝혔다.

● 5월 21일, 수하르토는 대통령직에서 사임하였으며, 권력을 부통령이며 부하인 하비비에게 이양하였다. 그러나 모든 정부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시위는 계속되었으며, 경제 분석가들은 하비비를 “작은 수하르토”라고 불렀다.

● 5월 26일 하비비 대통령은 노동 지도자인 무타르 팍파한과 정치적 이유로 투옥되어 있던 파뭉카스 역시 석방하면서, 20명을 더 석방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인권 관계자들은 2,000명 이상이 정치적인 이유로 투옥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음날 2명이 더 석방되었다.

● 5월 27일, 정부는 상업 노조에 대한 32년간의 금지령을 해제하였으며, 팍파한이 이끄는 ‘독립상업노조본부(SBSI)’ 역시 정부로부터 승인을 얻었다.

● 6월 3일 정부는 1998년 예측을 발표하였다. 심각한 경기 후퇴(-10%)와, 높은 인플레이션(80-85%), 10년만의 최고 실업율(15%) 등이 예상되었다.

3. 일 본

일본은 이번 아시아 경제위기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난 1991년 거품경제가 붕괴되면서, 경제가 약화되었다. 지난 2년간 경제는 정체되었으며 전문가들은 불황을 예측하였다.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으로 건너가고 있으나, 엄격한 이민정책으로 인해 다른 나라의 이주민 노동자들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주민 후원 단체들이 관찰한 바에 따르며, 아내에 대한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4. 말레이시아

경제와 자국 노동자에 미치는 영향

1997년 한해동안, 주식시세는 53%가 하락하였으며, 1998년 1월, 링깃화는 1달러당 4.88링깃이라는 역사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1997년초와 비교하여, 48%가 하락한 수치이다.

- 이자율이 높아지고, 식료품, 고무, 팜오일 등을 중심으로 물가가 상승하였다.
-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계획이 중단되거나 연기되었다.
- 임금체불의 증가로 인해, 노동자들의 수입이 감소하였다.
- MTUC에 따르면, 1997년 6월부터 연말까지 약 10,000명의 공장 노동자들이 해고당했다고 한다. 정부의 보고에 따르면, 25,860명의 자국 노동자와 3,030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올해 1월부터 5월사이에 해고당했다고 한다.
- 1997년 6월부터 1998년 3월사이에, 435개의 기업들이 도산하였다.
- 1998년 5월부터 앞으로 5년간, 외국계 기업들은 전화 사업의 61%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 정부는 IMF로부터 어떠한 긴급용자도 거부하였다.

이주민 노동자에 미치는 영향

- 인도네시아 출신 밀입국자와 미얀마 출신 여성 이주민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 밀입국자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 1998년 말까지 약 200,000명의 불법 입국자가 추방될 것이다. 1998년 1월 현재, 10,000명이상의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노동자들이 추방되었으며, 건설업의 불황으로 인해 필리핀, 방글라데시, 인도 출신 기술자들이 본국으로 귀환하였다. 이주민 노동자가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서 고무, 야자 농장 등의 3D업종으로 전환배치되고 있다.
- 인도네시아 노동자는 특별한 경우이다. 양국간의 특별한 관계로 인해 인도네시아 노동자는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인도네시아의 불안과 혼란으로 인해 수 천명의 노동자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로 유입되었다.

5. 필리핀

경제와 자국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 필리핀은 지난 30년가 IMF의 감독하에 있었다. 경제위기는 1997년 7월이전부터 존재하였으며, 아시아의 혼란으로 인해 더욱 가중되었다.
- 지난 1년동안 주식시세는 41%가 하락하였으며, 폐소화는 1달러당 46.50페소까지 평가절하되었다.
- 1998년 1월 현재, 100만명이 경제위기로 일자리를 잃었으며, 실업율은 지난 7년간 최고치인 13.3%를 기록하였다.
- 고금리로 인해 작년에 한 은행이 도산하였다.

• 공장에서는 노동자들에게 노동시간을 단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많은 필리핀 노동자들이 외국에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고 있다.

- 1998년 3월, 석유산업에 대한 규제철폐 등 IMF의 용자조건을 실시한 이후, 16억달러 규모의 추가 용자가 이루어졌다.
- 정부는 경제위기로 타격을 입고 있는 외국의 필리핀 노동자들에게, 자국으로 귀환하지 말고 타국에서 직업을 구할 것을 요청하였다.
- 외국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높은 환율로 인해 이득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6. 한국

경제와 자국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 1997년 1년동안, 주식시세는 10년만의 최저치로 39% 하락하였으며, 지난 12월 12일 달러대 원화의 환율이 1달러당 1,891원을 기록하여, 55% 평가절하되었다.
- 경제성장인 20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한국전쟁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
- 지난 12월 3일 정부는 엄격한 조건으로 570억달러의 IMF 구제금융에 합의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IMF 지원을 받기위해 국가적 자존심을 포기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 1998년 1월, 약 100개의 중소기업들이 매일 도산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도산은 대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해 1월까지 3,323개의 기업들이 도산하였으며, 약 53,000개의 기업들이 올해말까지 문을 닫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작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276,000명이 직업을 잃었으며, 1월 현재 백만명 이상

의 실업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올해 2월, 국회에서는 합법적인 정리해고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국내 기업 소유한 도를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 3월에는 실업율이 6.5%에 달하였으며, 이는 지난 1980년대 중반이후 최고 수치이다.

- 1998년 3월, 정부는 외국인 회사의 투자, 중개, 은행업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또한 신용카드, 부동산, 증권 등에 대한 외국인 소유한도를 확대하였으며, 올 하반기에는 전화사업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한도를 철폐할 계획이다.

이주민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정부에서는 불법 이주민 노동자에 대한 사면을 실시하여 벌금을 물지않고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게 되었다.

- 1998년 1월에만, 10,800명에서 18,000명으로 추정되는 이주민 노동자들이 한국을 떠났다.

- 이주민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로 인해 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도 살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다.

- 1997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최소한 15만에서 30만의 이주민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귀환하였으며, 정부는 4월이후 10만명 이상의 노동자를 더 추방할 계획이다.

- 파렴치한 알선인들은 경제위기를 악용하여 더욱 많은 착취를 저지르고 있다. 한 예로, 지난해 12월 안산에서는 알선업자가 50명의 불법 이주민들로부터 일본으로 보내준다는 명목으로 500만원씩 거두어들였다. 그러나 이 노동자들은 알선업자에 의해 경찰에 신고되어 체포되고 말았다.

- 외국 산업연수생들은 올해 8월까지 본국으로 보내질 예정이나, 여전히 새로운 산

업연수생들이 입국하고 있는 설정이다.

7. 태국

경제와 자국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 지난 1996년, 태국의 이미 최저 경제성장, 고금리 등 최악의 경제위기를 겪었다.

- 작년 8월 20일, 정부는 172억 달러의 IMF 구제금융에 합의하였다.

- 1997년말까지 태국 증권시장은 52% 폭락하였으며, 올해 1월에는 바트화가 1달러 당 56.10바트까지 폭락하여 작년 1월에 비해 54% 평가절하되었다.

- 올해 약 11%의 물가상승이 예상된다.

- 정부는 국민들에게 달러와 금을 매각하거나 기부할 것을 요청하였다.

- 58개의 금융사가 영업정지되었으며,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였다.

-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20만명을 감원하였다.

- 일부 회사에서는 이 경제위기를 반 노조활동에 악용하고 있다. 그들은 심각한 위기에 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를 해체시키기 위해 직장을 폐쇄하였다.

-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외국에 나갈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대출도 해주고 있다.

이주민 노동자에 미치는 영향

- 1998년 2월, 정부는 30만명의 불법 이주민을 추방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 말레이시아로부터 추방된 방글라데시인들이, 태국내에서 질병에 시달리며 구금되어 있다. 태국 정부는 이들은 언제라도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방글라데시 정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 1998년 4월초, 국제노동기구(ILO)는 여성 노동자와 체포 및 강제 추방될 위험에 처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적절한 보호를 비판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정부가 불법 이주민들을 그들의 동의없이 체포하여 추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8. 싱가포르

- 1997년 10월 29일, 정부는 인도네시아에게 100억달러의 차관을 제공하였다.

• 주식시장은 곧 원상태로 회복되었으며, 1997년 7월부터 1998년 5월까지 33%의 하락만을 기록하였다. 싱가포르 달러화는 19%의 평가절하로 인해 미화 1달러당 1.719 달러를 기록하였다.

• 싱가포르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적은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인도네시아로부터의 충격이 과소평가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 싱가포르 역시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 이유는 싱가포르가 동남아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액수를 인도네시아에 투자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 1998년 2월, 정부는 경제성장 예측을 5.7%에서 2.5-4.5%로 하향조정 하였다. 관리들은 경기후퇴를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계속되는 동남아 지역의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예측을 다시 확인하였다.

-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161명의 불법 이민자가 체포되었다.

• 경제위기로 인해 웨스턴 디지털 439명, 시게이트 1,800명 등 2,300명 이상의 노동자가 1997년 6월부터 올해 5월 사이에 직장을 잃었다.

9. 남아시아

- 네팔 : 남아시아는 이 경제위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았지만, 경제전망을

어둡게 하리라고 예상된다. 네팔에서는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한다는 것이 매우 유망하게 생각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 일본 등의 경제위기는, 곧 이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네팔 노동자의 강제 추방을 의미하고, 네팔내의 노동자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된다는 뜻이다.

■ 스리랑카 : 현재 약 160만명 가량의 스리랑카 노동자들이 해외에 나가 있으며, 정부에서는 더 많은 노동자들이 해외로 나갈 것을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의 경제위기로 인해 노동자들이 추방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 론

“세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기술의 교환을 촉진시키며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실은, 경제의 세계화는 저개발국에 대한 자본가들의 통제를 강화시킬 것이며, 이들 국가들의 경제와 사회문화적 체계를 더욱 주변화시킬 것이다.” (성명서, Migrant Workers Challenging Global Structures Conference, 1996년 9월 1일)

우리는 아시아 위기의 경제, 사회적인 영향에 대해 지켜보았다.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몇 년간 더욱 악화될 것이다. 노동자, 이주민과 빈민들에게는 이러한 상황이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 더욱 악화된 상황에서 민중들은 희망없는 포기에 빠지거나, 사회적인 불안과 양극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주민 관련 조직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수백만의 추방된 이주민들이 다급한, 때로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 요구들을 해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더욱 조직화되고 집단화된 조직들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현재 진행중인 이 경제위기는, 우리에게 신자유주의의 폐해와 악영향에 대해 보다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분석, 결론, 행동계획들이 더욱 구체화되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무엇에 대한 지지이며 행동인가? 위기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대응은 이 위기와 세계화의 영향에 대해 감시하는 데 머무르지 말고, 전략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그리고 위기에 관하여

1. 아시아에 대한 IMF, 세계은행, 국제자본의 영향력과 통제 증가
2. 외국 및 아시아 거대기업에 의한 도산기업의 인수 / 합병
3. 수송, 은행, 금융서비스, 통신, 발전 등 전략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통제 및 소유 증대
4. 더욱 강화되는 다국적 은행 : 국내 은행이 도산하고 있는데 반해, 외국계 은행의 경우, 환차익으로 인해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다.
5. 이 위기는 APEC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태국, 한국, 인도네시아 등은 긴급용자에 대한 조건으로써, 강력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실행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6. IMF, 세계은행, APEC 등은 이 지역의 혼란에 대한 책임을 무시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민중들은 스스로의 자각 노력으로 이들의 역할에 대해 새롭게 깨닫고 있다.
7. 세계 경제위기는 모든 지역을 한순간에 파괴시킬 수 있다. 그 영향은 전세계적으로 퍼져나지만, 동시에 차별화되고 계급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 이주민, 노동자, 여성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으며, 특히 주변화되고 비공식적이며, 불법화된 계층은 더욱 많은 피해를 입게된다.
8. 세계 경쟁력이라는 명목으로, 국가들이 노동 보호법을 폐지하거나 축소시키며, 노동 유연성을 최대한으로 늘리고 있다. 또한, 한국, 홍콩,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는 더욱 강화된 이민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이주민 노동자와 사회운동에 관하여

1. 1998년말, 아시아에서는 2200만명에 이르는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므로 보다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일자리를 찾고자 할 것이다. 또한 많은 외채를 지고 있으며 자국내의 투자를 위해 외화가 필요한 국가에서는, 해외 노동자들의 송금하는 필요한 상황이다.
2. 자국내의 노동자들 역시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아시아 신흥공업 4개국에서만, 이 경제불황으로 210만명의 노동자들이 해고되었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는 올해 거의 100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추방할 계획이다.
3. 인력을 수출하는 국가와 수입하는 국가간의 상황차이로 인해, 수출국 노동시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진다.
4. 수입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주민 노동법 제정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4. 이 경제위기와 세계화는 직업에 대한 경쟁으로 인해, 자국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 사이의 긴장을 증대시킨다.
5. 경제위기로 인해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독단적인 정책이 더욱 강화되며, 국민감정도 악화된다..
6. 여성에 대한 차별을 강화한다. 그 이유는 첫째, 여성에게 어려운 상황에 대한 짐을 떠넘기는 경향이 있다. 특히 국가적인 절약 캠페인 등을 통해 여성에게 인내를 요구하게 된다. 둘째, 많은 여성들이 외국으로 가정부, 3D업종 등의 직업을 통해 진출하게 된다. 셋째, 노동운동에서 여성들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조합원 남편의 요구를 따르도록 더욱 강요된다.
7. 이 위기는 자국민과 이주민 노동자들에게, 저항, 대중적인 투쟁, 조직화 등의 계기가 된다.
8. 비정부기구들은 이주민 단체들을 조직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담, 쉼터 제공 등 좀더 많은 긴급 지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들은 조직화, 자각, 강화의 계기가 된다.

우리는 경제위기, 전쟁, 외교적 마찰 등을 이유로 이주민들을 추방하는 상황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 이주민들은 차용한 시간으로 타국에서 노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시간들은 그들 스스로의 발전과 조직화, 강화, 이주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여성 이주민 노동자

남성위주 문화에서 살고있는 여성, 단일민족 국가에서 살고있는 외국인, 자본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세상에 살고있는 노동자.

대부분의 사람에게 - 특히 나와 같은 남성에게는 - 너무나 익숙해진, 이 세상을 살짝 들춰보면 또 다른 삶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된다. 그러한 삶, 사람들을 처음으로 알게되었을 때, 충격을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궁금하다. 나외는 다른 삶, 여기와는 다른 세상을 발견하는 것에 흥분하거나 관심을 가지기에는, 우리가 이 사회에 너무나 잘 길들여져 있는 것일까 반성해본다.

이 글은 여성으로서, 타국의 노동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에 관한 글이다. 욕심만큼 많은 내용을 담아내지는 못하였지만,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 글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G7국가 여성 이주민 노동자들의 인권과, 둘째, 태국의 GAATW(Global Alliance Against Trafficking in Women)의 활동에 대한 소개, 셋째, '여성폭력에 관한 조사연구를 UN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한 마잔리저스와 린츄의 보고서', 그리고 넷째, 별첨 자료로 실은 '여성에 대한 폭력, 그 원인과 결과에 관해 특별 보고관이 UN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예비 보고서'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방선진 7개국에서 여성 이주민 노동자들이 겪게 되는 상황과 인권문제에 대해 다루었으며, 두 번째 부분에서는 태국의 국제적인 반(反) 인신매매 단체인 GAATW에 관한 소개와 활동내용을 담았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UN 특별보고관인 '라디카 쿠마라스와미'에게 제출된 여성폭력과 인신매매에 관련된 보고서에 관한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라디카 쿠마라스와미'가 UN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여성폭력에 관한 보고서 중에서 여성 이주민 노동자와 인신매매에 관한 부분을 발췌하였다.

전체적인 큰 흐름 속에서 뚫어보려는 시도가 역부족이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 이주민 노동자의 인권 상황과 개념 정리, 대응 활동 등을 포괄적으로 담아보려는 시도였음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 번역 : 노승영, 김주영

1. G-7 국가 이주민 여성의 인권- 조직화 전략 -

G7: 개요

이주민 여성과 국제 경제

말리카 더트

현재의 경제적 변화에서 드러나듯이 이주민 여성들은 국제 경제에서 특별하고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기술 변화, 자본 흐름의 방향, 초국적 기업의 증가는 모두 자신의 이익 기반으로 값싼 여성 이주노동자에 크게 의존한다. 예를 들어 많은 일자가 국민보험의 혜택을 받는 전일제에서 보조적 임시직으로 바뀌었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착취적 노동 조건이 널리 퍼져 있으며 이런 새로운 구조를 지탱하는데에는 이주민 여성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임시적이고 착취적인 성격의 노동 조건은 이주민 여성에게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역사상 지금 시점에서 특히 흥미로운 것은 이주민 여성들의 현실이었던 것이 점차 증가하는 세계 여성들의 노동 모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 재구성, 구조조정 계획, 점점 더 많은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외채 부담을 겪고 있는 정부들은 지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항상 이주민 여성에게 의존해왔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가사 노동자, 간호사, 매춘, 의류 노동자로서 일해온 필리핀 여성들은 자국 정부의 중요한 외화 공급원이었다.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이주민 여성의 증가는 반이민 정서의 증가를 야기했다. 국가들은 불법 입국에 부과하는 벌금을 늘리고 입국을 제한하며 인종적, 반이민적 선전에 여념이 없다. 경제가 세계화되고 자유시장이 유일한 경제발전 모델로 평가받는 지금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증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국제경제는 제한 없는 자본 흐름의 유동성과 시장 접근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윤 극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자유로이 국경을 넘을 수 있고, 임금을 낮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상황이 취약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G-7 국가의 이주민 여성에게 공통된 경험은 주류 여성 운동이 우리의 문제를 자신들의 의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주민 여성들이 인권을 요구하기 위한 역동적이고 중요한 조직을 만들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대중적 토의에서 주변에 머물러있다. 우리가 직면한 도전은 이주민

여성의 인권 문제를 어떻게 주변에서 중심으로 옮기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들 대다 수는 개별적, 자율적으로 조직을 만드는 것 뿐 아니라 주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주변에서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은 또한 “중심”과 “주변”이라는 범주를 재정의 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 이러한 재정의 없이는 최초 부문에서 인권을 침해한 사회/정치/경제적 구조의 일부가 될 위험이 있다.

우리는 두 수준에서 주변과 중심을 논의할 수 있다. 한 수준에서는 소위 여성 운동을 보다 포괄적이며 모든 종류의 여성들의 현실을 대표하도록 만들기 위해 연구를 해야한다. 이런 맥락에서 중심을 재정의 하는 것은 여성성의 정체성, 즉 특정한 계급이나 인종 혹은 특별한 범주의 “여성”만을 지칭하지 않는, 여성에 대한 정의를 의미한다. 우선 “여성”이란 용어를 많은 다양한 종류의 여성의 현실을 대표하도록 사용하여, 대표되지 못한다고 느끼는 여성을 위해 “이주”나 “아시아” 등의 단어를 추가하여 “여성”을 끊임없이 한정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이주민 여성은 여러 정체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수식어도 여성의 전체 개성을 포괄할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중심을 재정의 하면 이주민 여성의 목소리를 여성성의 정의에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주변에서 중심으로 이동하는 두 번째 수준에서는 우리의 문제를 다루도록 여성 운동의 목표를 바꾸는 것은 실제로는 또 다른 목표를 위한 단계이다. 즉 최초 부문에서 이주민 여성에 대한 억압으로 귀결된 조건들을 바꾸는 것이다. 중심의 재정의는 국가 경제와 국제 경제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재정의는 이주민 여성의 목소리 뿐 아니라 다양한 민족 공동체의 목소리를 필요로 하는 작업이다. 이 재정의 작업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아를 이미 중심에 존재하는 것으로 개념화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주민 여성 문제의 주된 흐름은 인권의 틀을 이용함으로써 도움을 받았다. 인권 개념은 특히 이주민 노동이 강도를 더해가는 이민자에 대한 공격, 자민족 중심주의, 외국인 혐오증과 결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주민 여성의 권리를 위한 조직을 만드는데 중요한 도구이다. 주류 사회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국제 무대에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 인권의 요구는 사회로서의 우리가 지키기로 동의한 최소한의 기준들에 대해 인간으로서의 우리 모두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주민 여성의 권리가 그들에게 최악의 일자리, 최악의 임금, 최악의 노동 조건을 부여하는 세계에서의 기초적인 인권이라는 것은 천명함으로써 이주민 여성은 인류의 정

의에 포함될 수 있다.

이 인권의 틀을 통해 이주민 여성의 삶을 바라볼 때 다양한 인간 경험의 내적 연관성이 분명해진다. 유색인 여성, 남반구의 여성, 동유럽의 여성, 더 황폐한 나라에서 멀 황폐한 나라도 가서 다른 사람들이 하려하지 않는 일을 하는 세계 각지의 여성 사이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된다.

하지만 인권의 틀을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한다. 모든 여성(?)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여성의 권리를 인권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최초 부문에서 여성을 인권의 예로부터 제외한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여성 사이에도 세력 차이와 불균형이 존재하며 이것은 인정해야 한다. 이주민 여성 같은 공동체의 문제가 주변화되는 것은 여성이 단일체로 간주될 때이다.

인권 운동과 이주민 여성 운동은 완전히 별개의 노력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들은 서로 잘 융합되지도 않는다. 이주민 여성은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발언하고 조직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주변화 된 채 남을 것이며 그들을 포함하지 않는 목소리에 의해 그들의 문제가 대표될 것이다.

세계 각지의 이주민 여성들이 연대한 것은 매우 최근의 일이다. 예를 들어 미국과 멕시코 또는 필리핀과 싱가포르의 경우 조직화를 위해 연대하는 데에는 분명히 지리적인 근거가 있다. 하지만 G-7 국가에서 이주민 여성의 공동체를 만들려는 이번 시도는 비교적 새로운 노력이다. 각자의 나라에서 이 일을 한 우리 모두가 우리들의 경험이 지닌 유사성을 더욱 잘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시도는 역사적인 노력이기도 하다. 우리들 다수는 인권의 틀을 사용했는데 이는 조직화하는 데 유용한 도구이자 방법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송출국과 유입국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G-7 국가의 노력으로써 시작했다. G-7 국가에 초점을 두는 것은 이들 국가의 정치와 경제가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과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세계무역기구의 정책은 G-7 국가들의 이익에 의해 좌우되며 우리가 이들의 실체를 인정한다면 다른 국가들의 패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다른 여성들은 G-7 맥락에서 발생한 것은 유사한 사회경제적, 정치적 차이가 있는 세계의 나머지 지역 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여성 운동은 북반구-남반구의 토대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쿠웨이트로 가는 필리핀 여성, 인도로 매매되는 네팔 여성을 포함한다. 아마 우리는 단순한 G-7 맥락보다는

더 국제적인 맥락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조직화 전략으로서의 생각은 다음 G-7 회합 이전에 연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개별적, 집단적으로 발전시켜 자신의 조건을 다루는 데 이용한 전략을 연구하고 공유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전략들이 주변화되고, 착취받고, 취약한 집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국경을 넘어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교훈이자 조직화 모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늘어나는 경제침체와 인종주의에 직면한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볼 때, 이주하고 도피하는 여성들의 증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여성으로서의 우리의 역할과 우리가 연구하는 전략이 우리의 문제를 주변 너머로 옮기는 데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이것은 다음 천년의 운동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G-7: 캐나다

주류 여성 운동의 주도권 획득

펠리시타 빌러신

캐나다 여성의 지위를 위한 전국 활동 위원회(NAC)는 3년 전에 2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기념식 3년 후에 NAC를 구성하는 400개의 단체들은 암도적인 지지로 유색인 여성들 의장으로 선출했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성취이다. 특히 캐나다의 이민자이자 1979년 이후 이주민 가사 노동자들과 일한 활동가로서의 내게는 특히 그렇다.

캐나다의 거대한 여성 단체에서 항상 소수 존재였던 유색인 여성들이 최초로 자신들의 문제를 이 단체의 중심으로 가져오려고 결심하는 데는 20년이 걸렸다. 따라서 우리는 단체 내에서 주도권에 대한 의무가 있었다.

이것은 자연발생적이 아니라 매우 의식적인 행동이었다. NAC의 소규모 유색인 여성 간부회의로서 우리는 우리들 중 한 명이 이 단체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결론을 내렸다. 주류 사회 운동, 노동 운동, 여성 운동으로 하여금 캐나다에서 가장 소외된 여성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진지하게 다루도록 하는 것은 이민 여성, 이주민 여성, 유색인 여성의 부문에서 가장 힘든 일이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류 단체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할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단체 개개인이 능력과 성과를 결합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우리는 그런 권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단체원들이 당당한 제 목소리를 내고 주류 여성 단체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이 필요했다.

우리가 배운 또 다른 사실은 우리가 NAC 같은 주류 단체의 주도적 위치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우리의 문제들이 다루어지는 방식에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주민 여성의 문제)

하지만 우리가 아직도 배우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유색인 여성, 이민자, 난민 여성, 소외된 여성들이 NAC 같은 주류 단체의 주도권을 얻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가 단체의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게다가 우리는 의식적으로 반인종주의적인 단체 변화를 이끌어내어야 한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다. 주류 여성 단체의 중심에서의 경험 중 어떤 것은 매우 놀랍고 때론 충격적이었으며 언제나

매우 흥미로웠다. 예를 들어 단체 지도부의 중심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우리는 “선배들의 네트워크”에 들어갈 수 있어야 했다. 우리 자신들의 전문가 또는 유색인 여성 전문가가 있지 않다면 우리는 “선배들의 네트워크”的 전문가와 충고를 받아들여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소외된 여성, 소수파 여성들이 보다 많이 이 단체의 다양한 전문 분야에 진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유색인 여성의 NAC 같은 주류 단체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 때 신속한 반발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반발의 한 형태는 캐나다의 나머지 백인 여성들이 이 주류 단체에 의해 제기된 문제들에 참여하기를 중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NAC는 나를 위해 말한다”를 비꼰 “NAC는 나를 위해 말하지 않는다” 같은 슬로건이 우리의 현재 지도력에 장애가 되었다.

우리가 최초의 유색인 여성 의장을 가지게 되었을 당시 26명의 집행부 중에 다섯 명 만이 우리 유색인 여성, 이주민 여성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지난 6월 선거 이후 26명의 선출된 집행부 중 11명이 유색인 여성이다. 이는 우리가 이 주류 단체 내에서 행한 일들에 대한 동의의 표시이다. 다시 말해 이 주류 단체 NAC의 주도권의 절반은 유색인 여성, 이민 여성, 원주민 여성, 레즈비언으로 구성되어 있다.

캐나다의 반이민 정책

캐나다 정부는 영주권 혹은 토지 소유가 가능한 이민자 지위를 신청하는 사람에게 무거운 “인두세”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민자, 난민, 이주노동자에게 절대적인 수단을 도입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바로 얼마 전 이민부 장관이 시민권의 조건을 속지주의에서 속인주의로 바꾸려는 제안을 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렇게 되면 캐나다에 온 난민이나 비이민 이주자의 자녀는 자동적인 시민권을 얻을 수 없게 된다.

1950년대 캐나다는 카리브 출신 가사 노동자들에게 조건부 입국 허가를 주었다. 이는 그들이 1년 동안 가사 노동자나 유모로 일한 경우에 이민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 정책은 임시 노동 허용 프로그램으로 변경되었는데 제한된 기간 동안만 캐나다에 머물 수 있는 영구적인 가사 노동자 대기자를 확보하려는 것이었다.

1979년에서 1980년 사이 가사 노동자들은 임시 노동 허용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1년간 벌였다. 그들은 영주권을 얻는데는 성공했지만 이것은 노동 허용 프로그램을 2년 수행한 후에만 가능했다. 캐나다 정부가 이 프로그램을 중단하려 했을 때 많은 반대가 있었다. 대신 입주 가사 노동자 프로그램이 1992년 실시되었다. 이것은

캐나다에 들어오는 가사 노동자의 수를 1990년의 만 명에서 현재의 한계점인 3천 명 까지 제한했다. 현재의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은 이주노동자의 수를 1993년의 15만 명으로 늘렸다. 이 임시직 노동자들에게는 어떤 서비스도 제공되지 않으며 조직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베이징 회의에 뒤이은 작업의 결과로 INTERCEDE는 캐나다가 모든 이주노동자와 가족 구성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1990년 유엔 협약에 서명하도록 캠페인과 청원을 시작했다. 이 국제 협약은 유엔 회원국들이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기본적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 규정을 살펴보면 협약은 이주노동자를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우, 강제 노동, 노예 혹은 예속, 위협과 신체적 폭력으로부터 보호한다.

협약은 연합이나 조합을 구성하고 유입국 국민과 동일한 임금을 받으며 자신들의 소득을 모국에 보낼 권리와 보장한다. 협약은 이주민과 가족들이 의료 혜택, 교육, 기타 사회적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제공한다.

더욱이 유엔 협약은 자의적 감금으로부터 이주노동자를 보호하며 체포될 경우 그들이 영사급 기관과 접촉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 조약이 강제성을 띠기 위해서는 20개국이 서명 및 비준을 해야한다. 이집트, 모로코, 필리핀만이 서명 및 비준을 했으며 그외 3개국이 서명을 했을 뿐이다.

이주민 여성의 베이징에서 얻은 것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유엔 여성 대회에서 적어도 180개국 정부가 행동강령이라고 불리는 문서에 관한 1년 여에 걸친 협상의 합의에 도달했다. 문서에는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켜 전세계의 여성의 회의의 세 가지 슬로건인 평등, 발전, 평화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여성의 삶에 대한 12가지 중요한 분야가 나열되어 있다.

행동강령 초안에는 아주 혹은 이민 여성이나 여성 이주노동자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이주민 여성 단체와 기타 비정부기구 후원자들의 존재, 로비, 인내로 인해 베이징 문서는 이주민 여성과 여성 이주노동자의 존재를 인정할 뿐 아니라 적어도 22개의 단락에서 그들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분명히 행동강령에는 심각하고 뚜렷한 누락이 보인다. 가장 중요하게는 이주의 여성화를 초래한 빈곤의 여성화가 현재의 세계 경제 체계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것의 고유한 현상이라는 점이 언급되지 않았다. 남반구 여성의 늘어나는 빈곤이 국제 금융 기구에 의해 심각한 채무국에 부과된 구조 조정 계획에 기인한 것이라는 인식도

없다.

결론적으로 무엇보다도 민중에게서, 특히 여성에게서 이윤을 얻어내는 금융 기구, 초국적 기업, 세계 시장 경제의 주요한 계획자 및 수혜자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고 있지 않다. 베이징 회의 이전의 준비 회의에서 간부를 맡았던 이주민 여성 단체들은 끊임없이 모든 이주노동자와 가족 구성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1990년 유엔 협약의 서명, 비준, 강화를 요구했다.

강령의, 빈곤에 관한 부분에서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이주민 여성 인권의 완벽한 실현, 폭력과 착취로부터의 보호를 보장”하도록 되어있다. 유럽 연합의 유입국들은 이 조항에서 합법 이주자와 불법 이주자를 구분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하지만 정부가 “여성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합법 이주민 여성의 권리행사를 위한 수단을 제공하고 그들의 기술, 외국에서 받은 교육, 자격을 인정하여 합법 이주민 여성의 생산적 고용을 촉진하며 그들을 노동력에 완전히 편입하도록 장려”하도록 요청받는 부분에서는 이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부분에서 이주민 여성과 여성 이주노동자들이 “또한 특히 폭력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난민 및 추방된 여성, 이주민 여성, 여성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인권과 가능한 대응 수단을 인식”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이 권고되어 있다.

강령은 여성 이주노동자와 같은 특히 취약한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현재의 법률을 강화하고 송출국과 유입국의 여성 이주노동자를 위한 새로운 법률을 적절하게 발전”시키는 것을 포함한 “특별한 수단”을 요청하고 있다.

합법, 불법을 막론하고 이주민 여성, 이민자, 난민, 기타 추방된 여성들이 예속, 연한 계약 노동, 착취, 성적 괴롭힘이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분명한 조치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

경제에 관한 부분에서 우리는 다음의 단락 156이 포함된 것에 만족한다. “가사 노동자를 포함한 여성 이주노동자는 송금을 통해 송출국 경제에 기여하고 노동력에의 참여를 통해 유입국의 경제에도 기여한다.” 또한 “여성 이주노동자는 노동 및 이민법에 의해 가장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비엔나에서 열린 준비 회의에서 50개 단체 이상이 밝힌 요구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 요구는 보호적 노동법, 복지 프로그램, 성 평등을 적용하는데 국가의 지위에 근거하여 여성에 대해 이루어지는 차별을 근절하려고 했다.

베이징으로 가는 모든 길목에서 여성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포함하도록 노력한 집단적 목소리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한가지도 성취하지 못했을 것이다. 행동강령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이제 우리는 나머지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은 전세계 여성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의 정부가 베이징에서 행한 서약을 실행하도록 감독하는 일이다.

조직화와 전략

자리토 바사

이주민 여성은 이탈리아에 처음 오게 된 것은 약 25년 전이다. 처음에는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레아에서, 다음에는 카보베르데와 필리핀에서, 뒤이어 소말이아에서 이주해 왔다. 1980년대 초 이탈리아 경제의 성장에 따라 이들 여성 대부분은 이전에 주로 반도 남부의 가난한 이탈리아 여성들에 의해 행해진 가사 노동자 일을 얻었다. 여성 이주노동자는 이탈리아 인구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1995년 12월 공식 기록에는 이탈리아 내의 922,706명의 이주노동자 중에서 42퍼센트가 필리핀, 라틴 아메리카, 카보베르데, 에리트레아, 기타 아프리카 나라들에서 온 여성이다. 여성 이주 노동자는 이탈리아의 여가 생활양식을 떠받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기둥이지만 성차별, 계급차별에다 인종차별까지 당하고 있다.

이탈리아 이주민 여성의 상황은 이 책에 제시된 다른 나라의 이주민들과 다르지 않다. 이탈리아로의 여성 이주가 여전히 진행중인 문제이긴 하지만 나는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직화 노력의 진보적 변화를 제시하고자 한다.

초기에는 이주민 단체가 얼마 없었다. 그들은 대개 혼성이었고 일반적으로 남성이 이끌었다. 최근까지도 여성들은 가부장적 통제와 극심한 차별을 겪었다. 그래서 그들은 독립된 조직을 만들기 시작했다. 약 6년 전 이주민 여성 조직이 탄생했다.

로마에서 다양한 나라의 여성들을 모으려는 시도는 1990년 나의 작은 필리핀 여성 모임에서 시작되었다. 로마에서 열린 유럽 유럽 개발과 여성(WIDE) 지역 회의에서 나는 유럽 여성들이 자신들의 활동에 이주민 여성을 연관시킬 것을 제안했다. 당시 나는 몇몇의 이주민 여성들을 조직하여 “네트워킹”에 관한 워크샵에 참가시키는 일을 맡고 있었다.

서서히 우리는 서로를 알아갔고 얼마 후에 유럽 국가의 다양한 이주민 여성 단체와 접촉하려고 연구 여행차 온 아메리카 유색인 여성 대표단을 받아들였다. 또한 그 안에 어떤 여성 이주민 단체들은 아프리칸 등 유럽 내 흑인 여성 네트워크 같은 이주민 네트워크와 지역 차원에서 교류를 맺고 있었다. 이탈리아에서 우리는 1994년 카이로에서 인구와 개발에 관한 국제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는 비공식적인 토대에서 활동을 계속했다.

우리는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개발에 관한 세계 사회 정상회의를 대비하여 정치적 성명을 발표하고 행동강령의 해당 단락에 대한 개선을 제안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여성 대회는 이탈리아 이주민 여성들에게 하나의 전기가 되었다. 우리는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자신을 드러냈다. 이탈리아 여성운동, 정부기구, 민간기구의 지원을 받지 못한채 로마의 이주민 여성 조직들은 전세계의 다른 조직들과 접촉했다. 우리는 우리는 몇몇 조직들과 접촉할 수 있었으나 그들은 이탈리아의 북부와 남부의 다른 지역에서 온 여성들이었다.

1995년 7월 15일 우리는 전국적 차원의 조직을 결성할 최초의 기회를 맞았다. 베이징에 갈 예정인 이탈리아 여성들의 전국 간부 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 로마에서 다른 공동체들 출신의 여성 지도자 19명으로 이루어진 이탈리아 이주민 여성 네트워크가 새로이 결성되어 정치적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는 이탈리아 여성의 전국 간부 회의에서 우리의 문제들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우리는 도덕적 지원은 거의 받지 못했지만 베이징으로 여행하기 위한 우리 자신의 기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다섯 명의 이주민 여성 회의를 위해 마침내 중국에 도착했다.

NGO 포럼과 공식 회의 동안 우리의 존재는 의미가 깊었다. 우리의 문제를 제기하고 유입국의 수많은 이주민 여성들과 연대할 기회 때문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이탈리아의 다른 NGO 대표단들에게 “여성”에 관해 이야기할 때는 이주민 여성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기간 동안 우파 국회는 이주민에 관한 법령을 작성하고 있었다. 그 내용은 불법 이주를 규제하고 가난한 이주민에게는 이탈리아 입국을 금지하는 것이었다. 비정부, 반인종주의적 네트워크, 이탈리아 여성 운동, 몇몇 동정적 정치가들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에 관한 법령 943/95는 1994년 11월 17일 통과되었다. 이탈리아의 판사들마저 법령의 논쟁적인 부분들은 위헌이며 인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선언했다. 법령에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즉각적인 추방, 매춘을 포함한 판매인과 같은 자영업의 불승인, 매춘에서 벗어나 다른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인신매매 피해 여성의 보호 미보장, 가사 노동자와 기타 서비스업 종사자에 대한 사회 보험료 6개월 선납 부과, 기타 많은 독소 조항들이 들어있었다. 다시 말해 애초부터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는 의료 서비스에의 접근권에 관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은 재앙이었다.

11월 볼로냐에서 열린 베이징 후속 회의에서 이주민 여성 네트워크는 이탈리아 여성들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이주민 여성의 당면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들은 공

통점을 토의하고 이주민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이주민 및 이탈리아 여성의 전국 포럼을 제안했다. 제안은 모든 참석자들에 의해 압도적으로 가결되었으며 튜린의 이탈리아 여성들이 회의를 주관하겠다고 자원했다.

기금 모금의 시한을 맞추기 위해 준비가 신속히 이루어졌고 1996년 3월 22~24일 Migrantee E Native Cittadine Del Mondo: vivere, convivere, costruire로 이름 붙여 진 최초의 전국 포럼이 500명 이상의 여성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55개국의 출신 국을 대표하는 216명의 이주민 여성도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는 또한 벨기에, 네덜란드, 영국 등 다른 유럽 국가의 이주민 여성들과 개인들을 초대하여 그들의 경험, 조직, 전략을 공유했다. 이탈리아 시, 군 여성 정치가들과 EC 여성 의원, 여성과 남성 간의 평등과 동등한 기회에 관한 이탈리아 위원회의 의장도 참가했다.

6개의 활동 그룹은 시민건과 사회관계, 보건, 모성, 성, 가족, 현실적 조직적 정체, 직업, 경제적 독립과 사회적 역할, 인신매매와 매춘 등의 주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회의에서 이들 주제에 관한 제안이 발표되었다.

참석한 모든 이주민 여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주민 여성 네트워크의 강화였다. 이주민 여성 간부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창립 회원들에게 가입과 활동을 권유받았다. 현재까지 우리는 이주민 여성 단체와 개인들로부터 176건의 가입 요청을 받았다.

정부 기구 또한 조직 및 연대 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식적으로 지지를 표명했다. 법령 943/95는 폐기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이주민 여성 네트워크의 개입과 문제 부분을 시정하려는 기구들의 노력 덕분이었다.

이번 문제는 부분적인 승리이다. 이제 남은 일은 평등과 정의 실현을 위한 이주민 여성들의 요구를 더욱 보장하기 위한 조직화이다. 50년만에 처음으로 진보진영에 국가를 통치할 권리를 부여한 지난 총선의 결과 이주민 여성과 원주민 여성 간 연대의 전망이 더욱 밝아질 것이다.

G-7: 이탈리아

이탈리아 국가적 가사 노동 계약

필라 사라비아

이탈리아에서 반이민적 반격에도 불구하고 활동가들은 국가적 가사 노동 계약을 제정하는데 성공했다. 이 계약은 현재 유효하며 이주민 여성의 80퍼센트가 거주 허가와 귀화 권리를 얻도록 하는 도구가 되었다. 가사 노동 법률은 매우 진보한 여성보호 법률을 가지고 여성을 보호한다.

법률은 여성의 고용에 관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고용인은 피고용인에게 고용 개시일, 견습 기간, 노동 시간, 일요일을 포함하여 일주일에 하루 반의 휴식, 양측이 동의한 최초 임금, 노동자가 자신의 재산을 보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명시한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 16-19세의 학생은 “입주” 조건 하에 고용될 수 있는데 최저 임금을 보장받고 일주일에 최대 24시간을 일하게 된다.

- 밤에 노인, 아이들, 환자, 장애인을 돌보기 위해 고용된 가사 노동자는 밤 9시부터 오전 8시까지만 일하면 된다. 이 노동자들은 특별 수당을 받는다.

- 입주 가사 노동자의 노동 시간은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합의에 따른다. 하루에 비연속적으로도 10시간을 넘으면 안된다. 이에 더하여 노동자는 2시간의 낮 휴식을 취한다.

- 주당 최대 노동시간은 입주 노동자의 경우 55시간, 외부 노동자의 경우 48시간이며 매일 8시간 이내로 나뉜다.

- 초과 노동 시간은 양측의 합의에 따른다. 초과 시간의 수당은 최소한 시간당 정규 임금에 시간당 25퍼센트를 추가한다. 피고용인이 밤 10시에서 새벽 6시 사이에 일했다면 50퍼센트를 추가한다.

- 고용인의 집에 살지 않는 노동자는 주당 55시간 미만, 24시간 이상의 한도 내에서 여러 부업을 가질 수 있다.

- 임금은 시급이나 월급으로 지불된다. 시간당 최저 임금은 5650리라이며 최저 월급은 670,000리라와 식비, 거주비이다. 이 금액은 6개월마다 조정되며 2년마다 4퍼센트씩 인상된다.

- 일년에 11일의 휴일을 둔다.

- 매년 25일의 휴가를 둔다.
- 매년 성탄절 보너스를 지급한다.
- 병이나 작업중 사고가 났을 경우 며칠 동안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다.
- 출산 휴가와 양육일은 유급으로 보호된다. 출산 휴기는 출산 2개월 전부터 2개월 후까지이며 이때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다.
- 해고시 노동자는 보상을 받는다.

전략들

대부분의 여성 단체에서 제안한 이 전략들은 집단의 의견과 경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낳았다. 여성의 전략이 직면한 주요한 문제 중 하나는 정부가 이들을 싫어하고 NGO, 교회, 정당, 기업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여성 단체들은 또한 고립되어 여성 조직과 접촉할 기회가 없는 많은 여성들에게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 가사 노동자의 권리, 이민자 보호 법률, 이용 가능한 복지 서비스에 관한 정보 알리기
2. 피난처를 설립하고 이주민 여성의 공공 주택을 얻을 수 있도록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며 여성의 보호하는 이민 정책을 제정하도록 국가 및 지방 정부와의 관계를 확립할 수 있는 정치적 압력
3. 여름방학 동안에 주간 탁아 시설을 설립하고 정부 기금으로 여름 방학을 조직하며 아이들이 자신의 문화 정체성을 존중하도록 하는 활동을 시행함으로써 이주 노동자의 취학 연령 자녀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 가족 지원
4. 의료 및 사회 문제 참여의 기본권에 대한 정보 알리기
5. 개인 및 단체의 시각에서 여성의 일상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회의
6. 다양한 이해관계에 기반을 둔 여성 네트워크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연대
7. 폭력의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돋기 위한 서비스, 노동자의 권리와 의료 서비스 이용에 대한 법적 지원

G-7: 일본

이주민 여성에 대한 폭력

마스미 아즈

일본으로의 여성 인신매매는 급격하게 늘고 있는 세계적 현상의 일부이며 고도로 조직화되어 있다. 매년 100,000명 이상의 아시아 여성들이 섹스 산업에 종사하기 위해 일본에 보내지고 있다. 대부분은 타이와 필리핀에서 매매된 여성들이다. 여성의 인신 매매라는 말은 단지 매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인신매매의 본질은 매춘 이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를 띤 강제 노동이며 우편주문 신부, 가사 노동자, 공장 노동자, 호스티스, 나이트클럽 댄서 등을 포함한다.

일본에서 이주민 여성 대신 매매된 여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영구 거주를 의미하는 이민은 일본 역사상 의미있는 방식으로 허가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일본의 “이민”은 미국, 유럽과 매우 다르며 이주민 여성의 수도 상대적으로 적다. 하지만 많은 여성들이 매춘을 위해 엔터테이너로, 또한 최근에는 외국인 “부인”으로 매매되어 일본에 보내진다.

아시아 이주민 여성의 일본에서 얻을 수 있는 일자리는 대부분 여성의 성을 착취하는 일이다. 연간 수조원을 벌어들이는 거대한 이권 산업에서 여성은 최하부에 위치해 있다. 여성들은 범죄조직인 인신매매단에 의해 가사 노동자나 술집 호스티스 같은 보수가 많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거짓 약속에 속아 일본으로 보내어지지만 결국에는 창녀나 성적 노예로 일하게 된다.

여성 인신매매에 관한 일본 여성들의 문제제기를 1970년대 시작되었다. 이 기간에 일본의 경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가계 수입을 가져다 줄 만큼 성장했으며 한국 등 아시아 국가로 “섹스관광”을 떠나는 것이 일본 남성들 사이에서 인기였다. 1970년대 일본 여성 운동은 섹스관광 현상에 대항했다. 「여성 인신매매」에서 무라타 노리코는 일본 남성들이 처음에는 50년의 식민지 지배로 아직 사람들이 일본어를 알아들을 수 있던 타이완으로 섹스 관광을 했다고 말한다. 1972년 일-중 관계 정상화로 타이완과 일본 간 여행 잠정적으로 중지되자 한국이 새로운 대상으로 떠올랐다. 기생관광은 섹스관광에서 대유행이 되었다. 일본 남성들이 엔화의 경제력을 가지고 여성들을 비인격화하는 것에 한국 여성들이 대항했으며 뒤이어 일본 여성들도 기생 관광에 반대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런 반대 운동에도 불구하고 일본 남성의 섹스관광은 동남아시아, 특히 필리핀과 타이에서 널리 퍼져있다. 섹스관광 반대 운동 또한 아

시아에 널리 퍼져있다. 일본 정치가들은 해당국을 방문했을 때 반대 운동에 직면했으며 일본 남성들의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에 대한 매춘관광은 국가적, 국제적 멸시의 대상이 되었다. (무라타 노리코, '기로의 여성 운동', "AMPO 일본아시아 분기 보고", 25호 4부, 26호 1부, 1995)

1980년대 일본 남성들의 섹스 관광에 대한 국제적 비난이 증가하는 가운데 일본의 섹스 산업은 엔화의 가치 증대를 가져다 준 일본 경제 부흥과 함께 성장하기 시작했다. 당시 필리핀, 한국, 타이, 타이완 등 인접국에서 이주민 남성, 여성들이 갑자기 일본으로 밀려들어왔다. 많은 여성들은 일본 야쿠자나 조직범죄단과 연계된 인신매매 단에 의해 "엔터테이너"로 모집되어 일본에 보내졌다. 이 여성들에게 행해지는 감금, 폭력, 강제 매춘 등 인권 침해가 늘어났다.

1980년대 초기 섹스관광을 조금 감소하기는 했지만 동남아시아에서 특히 여전히 계속되었다. 1994년 네 명의 일본 남성이 『타이 바이순 토큐흔』(타이 매춘 핸드북)이란, 논란을 불어일으킨 책에서 매춘을 할 수 있는 장소와 가격, 여성의 종류, 대화, 섹스 행위를, 모든 매춘 장소가 나와 있는지도와 함께 묘사했다. 이 사건은 성폭력에 대한 여성 단체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으며 그들은 이 책에 대해 조직적으로 대응했다.

노골적인 인신매매

대개 브로커들이 자신과 연계된 친구나 동료 노동자를 통해 여성을 모집한다. 타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중국, 일본 등 외국인 브로커들은 한 번에 3~5명의 여성과 위조 여권을 포함한 여행 계약을 맺는다. 이런 거래에서 한 여성이 매매되는 데는 3백만 엔(약 3만 달러)이 든다. 이 돈을 지불하는 것은 손해가 아니다. 왜냐하면 여성에게 그 돈을 갚도록 강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성은 도착할 때 쫌이면 이미 큰 빚을 지고있으며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를 받는다. 저항하거나 도망치려고 하면 얻어맞기 일쑤이다.

"엔터테이너"

"엔터테이너" 비자를 가지고 일본에 입국하는 여성들은 또 다른 형태의 인신매매의 일부이다. "엔터테이너"는 종종 위장된 매춘이며 매춘을 하지 않더라도 여성은 성적 도구를 다루는 것에 대한 완곡 표현이다. 여기에는 취해서 더듬어대는 남성을 시중 들어야 하는 술집 호스티스로 일하거나 외설적인 댄스 쇼를 벌이는 것을 포함한다. 일하는 중의 폭력은 드문 일이 아니다.

일본에는 7만 명 이상의 허가된 "엔터테이너"가 있다. 그들은 알선책의 극심한 통제 하에 있어서 NGO 지원 단체와 접촉하는 경우는 드물다. 엔터테이너 비자는 6개월간 유효하며 고용인들은 6개월간의 임금을 압수했다가 여성들이 나리타 공항에서 일본을 떠나기 직전에서야 지급한다. 이렇게 해야 조건이 얼마나 열악한지 깨달은 여성은 도망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여성들이 사기를 당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이 두 개의 다른 계약서에 서명해야 할 때 사기의 징후가 처음 드러난다. 하나는 필리핀 해외 고용부와 주필리핀 일본 대사관에 제출하는 공식적인 계약서이다. 여기에는 최저 월 1,500 달러의 임금을 지불한다고 나와있다. 하지만 엔터테이너는 물가가 비싼 도쿄에서는 가까스로 먹고 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300~750 달러 임금의 비공식적인 계약서에 강제로 서명하게 된다. 이 임금은 일본 호스티스에 비해 턱 없이 낮은 금액이다.

많은 경우 엔터테이너는 반대로 춤을 추도록 강요받으며 긴 노동시간에는 술집을 청소하는 등 일본의 노동 기본법에 위배되는 일들이 포함된다.

하지만 그들은 "엔터테이너" 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노동부에 의해 법적인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현존하는 노동자 이익과 보호에서 배제된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일에 관련된 조직 범죄단은 임금을 압수하고 여권을 위조하며 벌금을 물리고 매춘을 강요하는 등 가장 기본적인 법률을 위반한다.

소위 고용인에게 겪는 학대 뿐 아니라 여성들은 수용소에서 경찰에게도 학대를 받는다. 경찰은 비자의 기간이 지난 여성은 범죄자로 여기며 진짜 범죄자들인 브로커와 알선책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이민 당국은 술집을 수색하여 대량으로 여성들을 체포한다. 불법체류, 즉 비자 기간이 지난 여성들은 수용소에 갇히게 된다.

지난 몇 년간 이민 당국이 정기적으로 피수용자에게 폭력을 행사해왔음이 드러났다. 1993년과 1994년 사이 일본 신문은 피수용 여성 노동자에 대해 11건의 폭력이 저질러졌다고 보도했다. 예를 들어 1994년 11월 1일 도쿄 지역 이민통제국 수용소에서 타오 야 편이라는 중국 여성은 범죄 신문을 받는 도중 신체적인 폭행을 당해 상처를 입었다. 맞은 얼굴 부위가 크게 멍들어 부푼 사진으로 인해 이 사건은 국내 신문 머리기사가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젊은 직원이 통제국을 그만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통제국에서 폭력이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법 체계도 피해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힌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매춘을 강요당한 세 명의 타이 여성의 경우이다. 그들은 고용주에게 적대감을 가지게 되어 그녀를 살해하고 도망치려고 결심했다. 법원은 감금과 강제 매춘이라는 그들의 상황을 무시

하고 2년 반이 걸린 태판에서 그들에게 10년 형을 언도했다. 제4차 공개 심문에서 판사는 뻔뻔스럽게도 피고에게 “당신이 매춘을 강요받았다 하더라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부당한 행동이 아니었나요? 무엇보다도 당신은 비교적 평온한 환경에서 지냈잖아요”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비슷한 살인사건들이 같은 결과를 냈다. 여성을 살인에 이르게 한 인신매매, 감금, 폭력, 성폭력, 강제 매춘의 시련은 언급되지 않았다. 재판은 단지 사건과 연관된 사실만을 다루기 때문에 진짜 범죄자들이 아니라 단지 피해자들만이 재판을 받는다. 이 사건들은 일본 여성 활동가들은 일본 형사 재판 기준의 한계를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

활동과 전략

매매된 여성들이 직면한 문제가 지난 10년간 대중적 관심을 얻었지만 미국, 유럽에 비해 초기 발전 단계에 있던 일본 여성 운동 주류는 매매된 여성들을 자신들의 의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일본 여성들은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남성 지배 문화에 대항하고 있다. 하지만 이후에 여성 단체들의 본보기가 될 두드러진 활동들이 몇몇 여성 단체에 의해 이루어졌다. 섹스 관광에 대한 강력한 여성 운동의 전례를 따라 최근 “매춘”과 “우편주문 신부”에 대항하는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피난처 운동

도쿄와 주변지역의 몇몇 피난처는 이주민 여성들이 고용주로부터 도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이 피난처들은 또한 외국인 부인들이 일본인 남편으로부터 도망치는 것도 돕는다. 현재 NGO들은 여성의 술집과 알선조직에서 도망치는 것을 도움으로써 그들을 지원한다. NGO는 매매된 여성들이 본국에 돌아가기 위한 필요 서류를 갖추도록 돕는다. 심리적 회복 조치를 마련하는 일도 종종 필요하다.

엔터테이너와 관련해서 많은 NGO들은 피난처를 제공하고 임금을 회수하는 것을 돕는 등의 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노동자 연합을 조직하는 매우 어려운 일을 포함한 예방 활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동부가 엔터테이너를 소위 “예술가”가 아닌 노동자로 인식하도록 해야한다. 간단히 말해 그들의 노동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운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수용소 이주민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NGO, 기자, 변호사로 이루어진 “이민 문제 특별 조사단”이 만들어졌다. 매 경우 국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다. 자신들이 당한 폭력을 증언할 수 없도록 많은 피해자들이 추방되기 때문에 특별 조사단

은 한국이나 필리핀 등 그들의 나라에 찾아가서 증거를 수집한다.

요코하마에 있는 미주라는 피난처는 1960년대 후반 일본의 “여성 해방 운동”과 1980년대 노동 기본권에 대한 동일한 권리와 여성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투쟁 이후 여성의 대안적 활동으로 시작되었다. 미주라 피난처는 국적에 관계없이 여성을 도우며 여성의 노동 조합으로 등록되어 있다. 현재 NGO들은 타이 여성의 인신매매와 강제 매춘 사건을 다루고 있다. 또 다른 피난처는 아시아 국가로부터의 여성 인신매매에 관심을 가진 여성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 피난처는 타이 여성의 인신매매가 절정에 달한 1990년대 초에 설립되었다. 설립 이후 32개월의 기간 동안 7개국에서 200여 명의 여성이 피난처에 머물렀으며 그 중 170명이 타이 여성이었다. 피난처들은 여성 인신매매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대사관과 협조하고 송출국의 NGO와 접촉하며 의뢰인의 안전한 귀국을 준비한다. 몇 개의 다른 피난처가 있지만 대부분은 일본의 거대도시인 도쿄와 요코하마 등지에 위치해 있다.

“우편주문 신부”

1990년대 “신부 부족”이 심각한 일본 농촌지역에 많은 여성들이 들어왔다. 사실 일본 남성과의 문화 간 결혼은 필리핀에서 남성을 위한 “오미아이”(맞선)을 주선하는데 관련했던 지방 정부에 의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일본 여성들이 정부 개입에 반대하기 시작하자 그들은 모집에서 손을 뗐다.

“우편주문 신부” 현상은 시골 지역의 “우편주문 신부”들이 노예같은 환경, 가정부로서의 노동, 외부세계와의 단절을 겪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 시놉가 되게 해주겠다는 사기를 당해 나이트클럽에서 호스티스로 일하게되는 경우도 있다. 일본의 결혼 중개업에 법적인 제한이 없기 때문에 폭력조직이나 섹스 산업 브로커들은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다. 사실 지방 정부들은 국제 결혼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여성들이 도시 지역으로 떠나버렸기 때문에 시골 지역 남성들이 부인을 얻기가 어렵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지방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이 국제 결혼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중개 업체들이 지사에 의해 운영되며 이들은 모집 여성의 유형에 자격을 부여했다. 아키타 현의 부지사는 필리핀 여성의 수입은 좋은 일이며 그가 “작년에 필리핀에 가서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본의 시골 생활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협통의 개선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신부 수입을 저지하기 위해서 여성 인권 단체들은 정부 주도의 결혼을 반대하는 모임을 조직했다. 하지만 현재는 정부의 개입이 물러간 대신 민간 알선업

체가 그들을 대신하여 끼어드는 경향이다.

최근 국제 결혼이 늘어남에 따라 피난처에는 이혼, 비자 발급 및 자녀의 국적 취득 문제와 관련된 폭력 사건을 더 많이 접하게 되었다. 여성의 피난처에서 도피처를 찾은 많은 의뢰인들은 일본 남성에게 매맞는 부인들이다. 이들은 필리핀, 콜롬비아, 페루, 한국 등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피난처로 올 때 대개 아이를 데려온다.

한편 필리핀으로 돌아가는 여성들은 자신의 “일본인” 자식이 그들의 일본인 아버지로부터 지원 혹은 심지어 인정도 받지 못하는 문제에 직면했다. 수천 명의 아버들이 일본인 “아버지”로부터 경제적 도움과 자식으로서의 인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몇몇 여성 단체들은 변호사들과 연대하여 현재 필리핀 NGO들과 작업중인 특별 조사단을 만들었다.

이에 따르면 여성 피난처의 활동의 많은 부분이 일본 사회에 영구적으로 정착하여 살고 있는 이주민 여성들인, 매맞는 여성의 요구조건에 반응하여 변화했다. 이런 일에는 다른 협력과 개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자녀의 교육, 결혼 문제 등을 위한 개인 상담, 아이의 양육권이나 아버지의 자식에 대한 인정 등 이혼 절차, 편모를 위한 직업 상담 등이다.

법률적, 입법적 작업

브로커와 알선업체에 관해 몇몇 NGO들은 술집 소유주와 인신매매꾼들을 처벌하기 위해 변호사와 긴밀히 작업중이다. NGO와 변호사 연합은 적극적으로 현행 법률의 개정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제 결혼에 관하여 NGO들은 결혼 알선업체가 조건과 계약 내용을 완전히 공개하도록 엄격한 허가, 감시 체계를 갖추고 문제가 생겼을 때 여성들이 접촉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도록 일본 정부에 압력을 넣어야 한다. 법률과 정책은 억압적 관계에서 여성을 보호해야 하며 결혼 중 강간은 범죄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일본의 지역 차원에서의 문제와 전략에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기본권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조약,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조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인권에 관한 다양한 국제적인 법률 문서를 활용하기 위해 국제적 차원에서도 할 일이 많다.

G7: 영국

자율적인 이주민 여성 운동을 시작하며

하나나 시디키

“사우트홀 흑인 자매들”은 이주민 여성 조직이다. 우리는 자율적인 이주민 여성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는 영국의 다른 사회운동 조직들이 이주민 여성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우리는 포괄적인 여성 운동과 폐미니즘 운동은 다수에 속한 여성들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인종 문제를 다루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영국의 흑인 여성과 이주민 여성으로서 우리는 인종주의가 다루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며 폐미니즘 또는 여성 운동은 이를 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우리는 영국의 노동 운동, 좌파, 반인종주의 운동이 이주민 여성에게 마찬가지로 중요한 성 문제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주민 여성들은 포괄적인 사회 운동에서 다루어지지 못하는 또 다른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결과적으로 이주민 여성들은 이 조직들의 사회적 의제에 포함되지 못했다. 우리의 생각은 여성들이 자신의 생각을 통해 조직하고 토의하며 로비하고 포괄적인 운동을 보다 책임있게 만들기 위한 공간으로서 자율적인 조직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 생각은 이주민 여성의 문제를 의제에 포함시키고 그 문제들의 확립을 우리가 주도한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우리의 문제가, 다른 단체들이 우리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의제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다른 운동들을 책임있게 만들고 이주민 여성의 요구조건을 향해 움직이도록 다른 단체들의 의제를 확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우리가 움직이고 영향을 미쳐야 할 중요한 단체는 이주민 여성 집단 그 자체였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민자 집단 내의 폐미니스트 조직으로 확립했는데 이는 우리가 이민자 조직과 여성 조직은 매우 보수적이어서 그 문제들을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한 그들이 여성에 관한 급진적 또는 폐미니즘적 의제를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다. 동시에 우리는 기금으로 운영되는 많은 조직들이 탈정치화되어 서비스를 제공할 뿐 그 문제들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운동을 펼치는 측면에서는 여성들의 요구조건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흑인 여성 또는 이주민 여성 조직화에 대해서 인종주의라는 큰 문제가 있다. 우리는 종종 여성 스스로 인종 문제를 성 문제의 우위에 두어 위계적인 억압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영국에서 좌파, 노동 운동, 반인종주의 운동에 의해 제기된 주요한 주장은 우리가 중심에 편입되어야 하며 우리의 중심적인 투쟁은 반인종주의 투쟁이고 다른 모든 소수 집단의 투쟁은 그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수 집단은 중심적 투쟁인 인종주의에 종속된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집단 내에서 여성 해방 투쟁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그들은 우리들의 집단 내에서 여성에 대해 행해지는 폭력에 대해 조직 차원에서는 침묵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우리 우리 자신의 집단에 관한 부정적인 측면을 제기한다면 인종주의 측의 반격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주민 여성의 요구조건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반인종주의 운동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주장과 맞서 싸워야 했다.

소수 여성 운동 진영 뿐 아니라 일반적 좌파, 반인종주의 측에서도 이런 비난을 했다. 우리는 많은 투쟁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주장으로 대처했다. 반인종주의 투쟁과 동시에 여성 해방, 계급, 성 등의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는 굴복할 수 없으며 우리 사회 내의 다른 억압적 단체들을 거부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들 중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위해서 인권을 옹호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주민 여성으로서 우리가 맞닥뜨린 또 다른 문제는 다문화주의라는 매우 자유주의적인 개념이다. 이 개념은 소수 집단은 동질적이며 집단 내의 여성 혹은 취약한 집단을 돋기 위해 다른 문화, 심지어 지배 문화도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가정한다.

유색인 여성은 자신의 문화를 존중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 같은 문제를 집단 안에서 내부적으로 해결하라는 말을 듣는다. 이러한 다문화주의적 자유주의 시각에서는 지배적 문화 혹은 종교적 유산의 일부가 아닌 중매 결혼 같은 관습은 지배 집단에게 비난받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여성의 문제가 보다 넓은 사회, 즉 좌파에서도 보수진영에서도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여성을 돋고자 하는 사람들마저도 집단 지도자가 그들의 개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수 집단에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믿는다.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소수 집단이 동질적이지 않다는 사실이다. 내부에는 권력이 분할되어 있으며 여성처럼, 소수 집단 내에서 권력을 갖지 못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집단 지도자는 가장 보수적이고 기부장적으로 되기 쉬우며 그들의 이해관계는 여성의 이해관계와 다르다. 그들은 외부에서 여성의 돋기 위해 개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보다 광범위한 여성 운동과 폐미니즘 운동이 있다. 우리는 성, 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러한 운동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다. 예를 들자면 폭력적인 남편을 살해하게 된 매맞는 여성의 경우가 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다수 집단의 여성들과 효과적인 연합을 만들었다. 우리는 남편을 살해한 죄목으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있는 아시아 여성의 사건을 맡았다. 다른 집단들에서도 수감되어 있는 여성들이 많이 있다. 그들과의 연합을 통해 우리는 이 여성들의 요구조건과 가정 폭력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룰 매우 성공적인 캠페인을 전개했다. 하지만 여성에 대한 폭력, 성 문제, 인종 문제에 관해선 효과적인 연합이 이루어졌지만 우리와 여성 운동, 폐미니즘 운동 사이에는 여전히 몇 가지 문제가 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여성의 폭력적인 결혼에 뮤어두는 이민 법률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포괄적인 여성 운동은 이민을 둘러싼 문제에 관해선 그다지 협력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어떻게 여성의 이민 법률을 통해 폭력적인 결혼에 사로잡히게 되는가 하는 문제 등인데 이러한 문제들이 바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연합을 결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혹독한 여성들로만 이루어진 조직이다. 백인 여성들의 참여도 환영하지만 아직까지는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다.

우리가 아직 초기단계에 있긴 하지만 우리는 포괄적인 여성 운동으로부터 지원을 얻기를 바라고 있다. 이것은 흥미있는 운동이다. 반인종주의 운동, 좌파, 여성 운동이 이주민 여성 문제를 다루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종 문제와 성 문제를 결합시킨다는 측면에서 이주민 여성 문제를 무대 중심에 위치시킨다. 위의 운동들이 이 도전을 실제로 받아들일지 보는 일은 재미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주민 여성 문제를 무대 중심에 두려고 노력하는 이 순간 이주민 여성으로서 얻은 성과를 후퇴시키는 일들이 있다. 종교 근본주의, 보수주의, 우리 공동체 내, 외부의 기부장적 권력의 성장은 여성에게 영향을 미쳤다. 여성들은 보다 전통적인 역할로 돌아가라는 압력을 받고 있으며 우리는 방금 얻은 성과들을 방어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이제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노동 운동으로부터 지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불행하게도 그들은 가정 폭력 문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수 집단 내에서 종교 근본주의적인 압력을 문제삼음으로써 인종주의자들의 반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또 하나 우려되는 현상은 여성 운동이 다수 집단의 종교를 둘러싼 문제점은 인식하기 시작했지만 소수 집단 내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종종 그들은 이주민 여성의 자신들을 위해 마땅면 그것은 자립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한 보수적인 이주민 여성의 종교적 피난처를 설립하라는 요구를 하면 다수 여성들은 모든

이주민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믿게된다. 페미니즘 운동도 이렇게 생각한다. 그들은 소수 집단 내의 페미니스트를 지원하지 못함으로써 자신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

사우트홀 흑인 자매들(SBS)에 관해

SBS는 가정 폭력, 관계 파탄, 무주택, 이민, 복지에 관련된 긴급한 위기 상황에 주로 개입하는 최일선의 활동을 수행한다. 이 넓은 활동 범위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의 방대한 양 때문에 끊임없이 확대되고 있다. 올해 우리는 279건의 긴급 상황이 있었는데 이는 우리의 전체 활동의 75퍼센트를 차지한다. 위기 상황의 개입과 지속적인 지원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일은 매우 어렵다.

우리나라의 형법은 발전해왔다. 우리는 자식 살해로 종신형을 받고 있던 여성 판결에 항소할 수 있도록 도와서 성공을 거두었다. 죄목은 판단력 감퇴로 인한 과실치사로 축소되었고 그녀는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

우리는 변호사들로부터 아시아 여성들의 상황에 대한 특별 보고서를 자주 요청받는다. 이것은 법원이 여성에게 딸의 영주 명령을 부여하는 등의 일에서 자세한 정보에 입각한 판결을 내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SBS는 젊은 여성의 궁정적인 자기 정체성을 발전시키고 경험을 나눔으로써 상처와 학대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그룹을 운영한다. 가정 폭력 지원 그룹은 가사에 관한 “스스로 하기(DIY)” 워크샵 등으로 매우 인기가 있다. SBS는 성 역할과 종교, 여성, 사회, 그리고 마사지, 향기 요법, 영어에 대한 다른 워크샵들도 지역 학교에서 실시했다. 우리는 아이들을 위한 여름 계획을 운영했고 여성들이 고독과 절망을 극복하도록 100명의 여성 리틀햄튼으로 일일 여행을 보내는 등 사교와 여행을 제공했다.

제한적인 “1년 이민 규정” 철폐를 위한 운동

우리의 사회복지 사업의 결과로 일어난 중요한 관심 분야는 이민 규정 때문에 폭력적인 결혼에 얹매여 있는 많은 여성들이다. SBS는 “여성의 권리”, “이민자의 복지를 위한 공동 위원회”와 연합하여 “여성, 이민, 가족법에 관한 회합”을 조직했는데 여기에 100명 이상의 여성이 참석했다. 이 문제가 즉각적인 관심을 요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으며 문제의 범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SBS는 대개 여성에 대해 악용되는 “1년 이민 규정”的 철폐를 위해 넓은 범위의 흑인 여성 단체와 새로운 연합을 만들었다.

영국에서는 매년 수백 명의 흑인 이민 여성들이 가족과 국가에 의해 압박을 받는다. 그들은 남편과 가족으로부터 폭력, 고문, 강간, 살인 위협을 받는다. 영국 이민법의 1년 규정은 결혼하기 위해 영국에 온 사람은 적어도 1년 동안 결혼생활을 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은 이 기간 중에 폭력적인 결혼생활에서 떠날 수 없다. 또한 그들은 기본적인 복지 혜택을 받을 권리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만약 그들이 폭력적인 환경에서 떠난다면 그들은 아무런 생계 수단도 가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 처해 있는 여성은 가정 폭력과 추방 중에서 양자 택일을 해야 한다. 이민법은 안전하고 폭력과 폭력의 위협 없이 살아갈 권리의 효과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내무부는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폭력을 경험했고 1년 규정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어떤 통계도 가지고 있지 않다. 법률 기관, 여성 단체, 비난처, 변호사, 상담 기관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을 둔 우리의 독립적 조사에 의하면 1994년 1월에서 1995년 7월 사이에 755명의 흑인 이주민 여성들이 결혼생활 파기로 인한 추방 위협을 받았다. 이 여성들 중 512명은 가정 폭력으로 도피한 상태였다. 이들의 68.4%는 아시아, 13.3%는 아프리카, 7.1%는 카리브, 7.3%는 라틴 아메리카 출신이었고 3.2%는 백인이었다. 1994년의 내무부 통계만 보더라도 14,920명의 여성들이 결혼 후 영주권을 얻었으며 370명이 1년 규정에 의해 영주권을 거부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10명은 공채로 인해, 360명은 결혼생활 파기로 인해 거부되었다.

이런 이민 규정들은 흑인 여성들을 추방하는 데 이용되었다. 흑인 여성들, 특히 신 영연방 국가에서 온 여성들은 1년 규정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결혼을 위해 영국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 아대륙 출신이다. 이는 식민지배의 유산과 과거 영국의 노동 수요, 아시아 공동체와 본국 사이에 결혼 상대를 고르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긴밀한 접촉 때문이다.

1년 규정 하에서 영국에 영구 거주 신청을 하려면 거주자인 남편의 지지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거주자인 남편이 더 많은 권력을 가지게 되고 통제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부담이 결혼에 지워지게 된다. 가장 많은 고통을 받는 것은 여성인데 힘이 가장 약하며 폭력과 다른 형태의 박해를 가장 많이 겪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정 폭력이 널리 퍼진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우리 사회 내에서 피해 여성에게 가능한 재원과 수단이 부족해서 이민 문제를 가진 여성에게는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많은 여성들이 국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다. 이는 이 기관들이 내무부에 알릴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더 많은 기관과 부처에 이민에 관한 질문을 하고 소위 “불법 이민자”를 적발하는 임무를 맡기면서 이 두려움은

증폭될 것이다.

폭력적인 결혼생활을 그만두는 여성도 있다. 그들은 자신에 의지하게 되거나 경제적, 성적 차취의 대상이 된다. 그들은 종종 여성의 피난처에 조차 의지할 수 없는데 이 피난처들이 주택 수익이나 소득 지원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 여성들은 둘 중 어느 것도 받을 수 없다.

많은 여성과 아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두려워한다. 그곳에서는 가족, 공동체, 국가, 경찰, 법률에 의해 차별과 박해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족들의 빈곤, 결혼과 이혼에 관한 전통적인 가치와 믿음은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아무 데도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방 위험에 직면한 몇몇 여성들은 자살이나 절망적인 수단을 고려하고나 시도한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무부는 결혼이 중단되었을 때 더 이상의 체류 허가를 내주기를 거부한다. 내무부는 중단의 원인을 무시하고 있다. 만약 내무부가 이후에 추방 결정을 내린다면 여성은 추방 결정의 시점에 7년 이상을 머물지 않았다면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이 마지막 단계에서도 기술적인 측면에 주장만 가능하다. SBS는 1년 규정이 근본적인 민주 원리와 인권을 위협한다고 믿는다. 이민법은 안전한 가족 생활을 영위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식을 결정할 권리를 침해한다. 정부는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에 관한 1993년 UN 선언의 지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아직도 1년 규정을 통해 혹인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1년 규정의 철폐 이외에도 우리의 운동은 정부가 이민법에 기인한 가정 폭력을 인식하여 영국에 머물기 위해 폭력적인 상황을 감내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의 지원을 요구할 권리를 위해 “공채의 지원 금지” 규정을 철폐하며, 이혼이나 별거 중인 여성이 겪는 성 차별을 망명의 근거로 인정하고, 가정 폭력을 추방에 반대하는 근거로 제시할 권리를 포함하여 이민과 망명의 모든 단계에서 항소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회복시킬 것을 요구한다.

G7: 영국

필리핀 이주민 가사 노동자 조직 결성

마거릿 힐리, 마리아 곤잘레즈

매년 수천 명의 해외 이주민 가사 노동자들이 21개 나라로부터 영국으로 일하러 들어온다. 비자를 얻기 위해서 그들은 특정한 실명의 고용인을 위해 일해야 한다. 이민 법은 유급이든 무급이든 실명의 고용인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고용도 엄격히 금지한다. 이 고용인들 또한 도합 37개국 출신이다.

이것은 “속박된 노동”的 체계이다. 이것은 노예 같은 조건에서 생활하고 일하도록 할 수 있으며 종종 실제로 그렇게 한다. 고용인들은 종종 여권과 임금을 압수하고 노동자를 인간 이하로 취급한다. 칼라얀 / 필리핀 이주민 노동자 센터의 위원회에서 “저는 개보다 못한 대우를 받았어요”, “그들은 내가 가난하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다루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들의 노예일 뿐이에요” 등의 이야기를 듣는 일은 드물지 않다. 이곳은 많은 여성들이 가사 노동에서 처음으로 도망쳤을 때 오는 곳이다.

1979년 영국은 가사 노동자로 영국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직접 노동 허가를 주는 것을 중단했다. 하지만 1980년 “이민 법률에 관한 양해”는 고용인이 자신의 가사 노동자를 “실명의 고용인을 보조하는 사람”으로 영국에 데려오는 것을 허용했다. 이는 그들이 특정한 고용인을 위해서만 일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입국 체계의 이런 점 때문에 가사 노동자들은 이 나라에서 일할 수는 있지만 노동자로서의 독립적인 이민자 신분은 받지 못한다. 그들은 단지 고용인의 물건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욱 정확하다. 예를 들어 고용인은 종종 여권을 압수한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여권을 압수하는 것은 범죄 행위인데도 가사 노동자에 대해서는 이것이 허용된다. 하원 청문회에서 정부 관리는 “고용인이 안전을 위해 여권을 보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칼라얀이 1000명의 가사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62.8%가 여권을 고용인에게 압수당했으며 그들은 고용이 만료된 후에도 여권을 돌려받지 못했다.

한편 영국에 입국하자마자 노동 조건은 종종 악화되는데 이는 가족의 일부만이 이루 하지만 그들의 요구를 조화시키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영국 내 외국인 가사 노동자

들이 권리를 빼앗기고 사실상의 노예 상태에 있다는 것은 여전히 슬프고 고통스러운 사실이다. 이 노동자들은 계약 노동에 대한 그들과 우리의 개념을 무너뜨리는 정도의 학대와 착취를 감내해야 한다.

1987년 이후 칼라얀과 필리핀 아주 노동자 위원회(CHMW)가 외국인 가사 노동자들을 도운 것은 4000건이 넘는다. 이들 중 2000건 이상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이들은 외국인 가사 노동자들이 반복해서 부당한 대우와 극심한 폭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오랜 기간 동안 여권 압수, 주당 16~20시간 노동, 휴일 없이 일주일에 7일 노동, 복도나 마루의 취침 시설, 식사 제공 거부와 영양 실조, 의료와 보건 서비스 이용 및 피해 보상 불가 등이 포함된다.

외국인 가사 노동자들은 종종 고용주의 집에 사실상 또는 문자 그대로의 감금 상태에 처해있다. 그들은 정상적인 사회적 접촉을 방해받고 있으며 집안의 다른 가사 노동자나 외부인들과 이야기할 수도 없고 가족에게서 편지를 받을 수도 없다. 때리고 머리를 잡아뜯고 침을뱉는 등의 신체적 폭력은 “일상적”이다. 인종주의적, 비하적으로 부르는 것도 보통이다. 여성들은 정기적으로 강간, 강간 위협, 강간 시도를 포함한 성적인 괴롭힘을 경험한다. (표를 참조할 것)

노동자들이 도망치려고 하는 것은 지속된 폭력 끝에 내려진 절망적인 결정이다. 종종 그들과 그들이 부양하는 고국의 가족들은 원래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알선 업체에 지불한 높은 수수료 때문에 빚을 지고 있다. 노동자가 영국 내에서 새로운 고용주를 찾는 노동자는 추방당하기 일쑤이며 고용주가 비자 간신을 계획하면 노동자들은 초과 체류자로 분류되어 고용인에게서 벗어나자 마자 추장된다. 하지만 대다수 고용인들은 노동자의 여권을 압수하여 보관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자신의 현재 이민 상태조차 모르고 있다.

CFMW와 칼라얀 사무실에 오는 노동자들은 입고 있는 옷 외에는 여권과 돈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상담과, 법률적 조언 등 공동체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들은 지난 경험에서 회복되는 것이 매우 느리며 이는 자신들이 영국에서 노동자 권리도 없이, 발견되면 추방된다는 지속적인 위협 속에서 공인받지 못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구속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들이 한푼 없이 고국으로 돌아가거나 가족들이 궁핍으로 내몰리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

법률적 상황

1980년까지 영국은 입국한 가사 노동자이 호텔, 식당, 국립 보건 기관, 일반 가정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 허가”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노동자로 인정

되고 그에 해당하는 권리を持つ 있었으며 조건부이긴 하지만 고용부의 허가 하에 고용주를 바꾸어 동일한 업종에 종사할 수도 있었다.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4년이 지나면 요청시 거주가 허가되며 일자리를 바꿀 수도 있게 된다.

많은 이주민 가사 노동자들은 가사 노동을 계속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의 사업을 벌이거나 보험, 여행 중개인, 우체국 직원 등으로 일했다. 하지만 1979년 정부가 가사 노동을 위한 노동 허가 제도를 폐지하고 외국에 거주하던 부유한 영국인이 자신의 가사 노동자를 함께 데려올 수 있도록 하는 양허 제도를 도입하자 이 가사 노동자 여성들은 이동의 자유를 포함한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빼앗겼다. 많은 사람들이 “방문” 비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급이든 무급이든 직업을 가지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었다. 취업 비자를 가진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비자에 고용주의 이름이 쓰여 있었다. 비자에 쓰여진 고용주의 집을 떠나게 되면 그들은 영국에 머물 권리가 잃는다.

칼라얀에서 보는 가사 노동자들의 주요한 문제는 그들의 명칭이다. “몸종maid”, “하녀servant”, “가사 보조household help”, “가사 보조자domestic helper”는 가사 노동이 실제 노동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고용주들인 가사 노동자들을 “가족 구성원”이라고 부르면서 정당한 임금 대신에 “아늑한 침실”을 제공하기도 한다. 인도 출신의 한 가사 노동자는 “런던의 아늑한 침실이 내 아들의 약값을 덜 순 없죠”라고 말했다.

영국에서 이주민 가사 노동자는 고용주에게 폭력을 당해도 그의 집에 있는 동안에는 그를 고소할 수 없다. 하지만 그녀가 그 집을 떠난다면 그녀는 다른 사람의 집에서 일할 수 없게되어, 고소를 할 수 있는 대신 영국에 머물 권리가 잃어버리게 된다.

칼라얀에 관하여

1987년 이래로 칼라얀은 외국인 갓 노동자들에게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 회복시키기 위해 일해왔다. 1991년 5월까지도 학대에 관한 무수한 보고서에 대한 내무부의 반응은 안내 소책자나 외국의 영국 대사관에서 가사 노동자를 위한 비자 인터뷰 정도였다. 이것들은 줄어들지 않는 학대에 대해 아무런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1994년 12월 4일 내무부는 고용인과 피고용인 양자에 의해 서명되는 “계약서”로 구체화된 “새로운 방안”을 도입했다. 여기에는 노동자를 위한 독립된 침실이나 영국에 있을 동안 임금 권리 등 세부 항목이 포함되었다. 내무부의 새로운 시도를 바라보면서 칼라얀은 고용인이 효과적인 조건을 위해 협상할 위치에 있지 못할 경우 “계

약”이 유효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진다. 이런 “계약”은 감시받지 않으며 계약이 법률상 강제적인가에 관해 심지어 정부조차도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지 못하다. 또한 정부는 문제의 원인인 고용주를 바꿀 노동자의 권리 결여를 언급하지 않았다. 칼라얀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외국인 가사 노동자는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가져야 한다.
2. 외국인 가사 노동자는 같은 직종 내에서 고용주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
3. 전 고용주에 대해 법률 소송을 하려고 하는 외국인 가사 노동자는 재판 기간 동안 거주와 노동의 권리를 가져야 한다.
4. 전 고용주를 떠난 외국인 가사 노동자는 “초과 체류자”로 분류되어서는 안 되며 합법적인 이민 지위를 가져야 한다.

이 조치들은 이후의 학대를 억제하고 현재 학대로 가득한 체제의 해악을 시정할 것이다.

[조사 결과 —— 칼라얀/CFMW]

이 통계는 1992년 1월 1일부터 1996년 3월 31일 사이에 고용주에게서 떠나 칼라얀/CFMW와 상담한 1000명의 외국인 가사 노동자에 기초하고 있다. 고용주들은 37개국 출신이며 노동자들은 21개국 출신이다. 표의 수치는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노동자의 비율을 나타낸다.

노동자 1000명의 경험

심리적 학대(위협, 욕설, 계속해서 고함치기, 모욕)	87.6%
신체적 학대(가족 구성원에 의한 때리기, 밀치기, 침뱉기, 발로 차기, 매질 등)	39.6%
성적인 공격이나 강간(강간, 강간 시도, 강간 위협을 포함)	11.7%
부정기적 식사 제공(남은 음식을 주거나 식사 제공을 거절)	38.4%
침실이 없음(복도, 부엌, 욕실, 창고에서 자도록 강요받음)	47.1%
침대가 없음	56.6%
감금(집을 떠날 수 없거나 보호자와 함께일 경우에만 떠날 수 있음)	39.1%
고용주의 여권 압수(또한 고용주에게서 떠날 때 돌려받지 못함)	62.8%
부정기적 임금	55.8%
계약 이하의 임금	56.29%
작업 중 휴식 할 수 없음	59.5%
하루 평균 노동 시간	17.07
월 평균 임금	172.37달러

필리핀 이주 노동자 위원회에 관하여

필리핀 이주 노동자 위원회(CFMW)는 지난 17년간 영국의 필리핀 공동체와 일했다. CFMW는 개인과 조직의 능력과 잠재력을 활용하여 강력한 기구를 만들고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CFMW는 매일 평균 20~30명이 방문하는 번영하는 공동체 기구이다.

영국에는 6만여 명의 필리핀인이 살고 있으며 대부분은 런던에 거주하고 있다. 소수 인종 공동체로서 필리핀인들은 복지, 사회보장 서비스를 얻는데 있어 많은 문제를 겪는다. CFMW는 필리핀인의 권리와 기회를 옹호하며 조언, 정보, 훈련을 통해 인식을 증진시킨다.

CFMW는 특히 필리핀 여성의 직면하는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위기 개입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많은 고용주를 떠난 필리핀 여성 가사 노동자들은 도움과 법적인 조력을 구하러 CFMW에 온다. 또한 가정 폭력 때문에 남편에게서 떠나온 필리핀 여성도 있다. 이런 경우 대부분에서 여성들은 많은 것이 필요하다. 잘 곳, 적어도 일시적으로 머물 곳 또는 피난처, 이민에 관한 법적 조언이 필요하며 그들이 수년 간 말로, 신체적으로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상담을 필요로 하고 보건, 의료 제공도 있어야 한다.

이민 지위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사회보장 서비스를 얻을 수 없다. 그래서 CFMW는 자원봉사자와 후원자의 네트워크에 의존한다. 이들은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집이나 재정적 후원을 제공하고 어떤 사람들은 전문 지식과 자격을 가지고 여성의 긴급한 요구 사항에 대처한다.

우리는 두 가지 방면으로 접근한다. 하나는 이민 지위에 관계 없이 소수 인종의 필요성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정부 각 부처와 사회보장 기구에 로비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웃 필리핀인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동체 내의 연대를 조직하고 강화하는 일이다.

CFMW는 몇 개의 필리핀 조직을 만들고 발전시키는 일을 도왔다. CFMW는 능력 배양을 중요시하며 개인 및 조직 차원에서 기술과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 시설 및 훈련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참여자가 기술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 조직, 동료, 함께 일하는 다른 단체에 필요한 일을 해내고록 한다.

최근 몇 년간 CFMW는 여성과 청소년에 관심을 기울였는데 이들은 영국 내 필리핀인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청소년들에게 동료를 위한 상담 훈련 계획을 실시하고 필리핀 학생이 많은 학교에서 협동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막 2년 과정의 여성 훈련자